

제410회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6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12월6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5)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9)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8)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6)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1)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6)
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3)
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3)
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86)
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0)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88)
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2)
1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22)
1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6)
15.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4)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6)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7)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2)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7)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8)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6)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8)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0)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6)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9)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7)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9)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8)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5)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4)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1)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5)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0)

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15)
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3)
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7)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1)
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9)
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6)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8)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8)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7)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96)
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52)
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6)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3)
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3)
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7)
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8)
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2)
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2)
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93)
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96)
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79)
5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85)
5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7)
5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85)
5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3)
5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4)
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4)
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8)
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62)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01)
6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0)
6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1)
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2)
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0)
6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1)
6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1)
7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4)
7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2)
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8)
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2)
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8)
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6)
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8)
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3)

7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5)
7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3)
8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31)
8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30)
8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4)
8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4)
8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9)
8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7)
8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7)
8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3)
8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2)
8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2)
9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3)
9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3)
9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6)
9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1)
9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4)
9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1)
9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2)
9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3)
9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8)
9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6)
10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5)
10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4)
10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4)
10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33)
1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9)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60)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35)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0)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1)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31)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7)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5)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6)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4)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5)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4)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1)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8)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13)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1)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1)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2)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5)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2)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6)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1)
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9)
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7)
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4)
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7)
1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2)
1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3)
1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1)
1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7)
1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8)
1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5)
1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6)
1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8)
1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3)
1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0)
1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2)
1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1)
1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1)
1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7)
1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1)
1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0)
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6)
1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96)
1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9)
1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3)
1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1)
1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66)
1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0)
1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7)
1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97)
1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0)
1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2)
1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33)
1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36)
1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5)
1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2)
1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2)
1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9)
1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62)
1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4)
1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4)

1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1)
1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5)
1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2)
1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6)
1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4)
1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8)
1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5)
1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0)
1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12)
1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1)
1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81)
1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6)
1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0)
1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2)
1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8)
1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8)
1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2)
1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5)
1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17)
1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6)
1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5)
1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3)
1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1)
1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2)
1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82)
1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8)
1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4)
1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4)
1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3)
1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2)
1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4)
1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5)
1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5)
1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2)
2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6)
2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8)
2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1)
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1)
2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5)
2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0)
2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2)
2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56)
2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5)
2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12)

2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444)
2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474)
2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489)
2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514)
2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522)
2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535)
2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중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733)
2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187)
2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414)
2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508)
2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532)
2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562)
2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578)
2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625)
2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644)
2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841)
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868)
2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940)
2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080)
2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113)
2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231)
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257)
2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268)
2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357)
2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410)
2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437)
2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500)
2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506)
2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520)
2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524)
2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560)
2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581)
2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689)
2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707)
2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5040)
2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5093)
2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5103)
2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5111)
2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125175)	
2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5230)
2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5298)
2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5302)
2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5496)

상정된 안건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5)	13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9)	13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8)	13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6)	13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1)	13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6)	13
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3)	13
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3)	13
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86)	13
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0)	13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88)	13
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2)	13
1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22)	13
1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6)	13
15.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4)	13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6)	13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7)	13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2)	13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7)	13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8)	13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6)	13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8)	13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0)	13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6)	13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9)	13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7)	13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9)	13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8)	13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5)	13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4)	13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1)	13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5)	13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0)	13
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15)	13
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3)	13
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7)	13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1)	13
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9)	13
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6)	13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8)	13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8)	13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7)	13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96)	13
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52)	14
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6)	14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3)	14
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3)	14
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7)	14
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8)	14
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2)	14
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2)	14
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93)	14
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96)	14
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79)	14
5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85)	14
5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27)	14
5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85)	14
5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3)	14
5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4)	14
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4)	14
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8)	14
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62)	14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01)	14
6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0)	14
6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1)	14
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2)	14
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0)	14
6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1)	14
6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1)	14
7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4)	14
7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2)	14
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8)	14
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2)	14
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8)	14
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6)	14
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8)	14
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3)	14
7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5)	14
7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3)	14
8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31)	14
8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30)	14
8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4)	14
8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4)	14
8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9)	14
8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7)	14
8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7)	14

8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3)	14
8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2)	14
8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2)	15
9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3)	15
9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3)	15
9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6)	15
9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1)	15
9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4)	15
9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1)	15
9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2)	15
9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3)	15
9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8)	15
9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6)	15
10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5)	15
10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4)	15
10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4)	15
10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33)	15
1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9)	15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60)	15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35)	15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0)	15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1)	15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31)	15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7)	15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5)	15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6)	15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4)	15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5)	15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4)	15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1)	15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8)	15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13)	15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1)	15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1)	15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2)	15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5)	15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2)	15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6)	15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1)	15
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9)	15
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7)	15
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4)	15
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7)	15
1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2)	15

1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3)	15
1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1)	15
1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7)	15
1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8)	16
1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5)	16
1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6)	16
1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8)	16
1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3)	16
1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0)	16
1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2)	16
1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1)	16
1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1)	16
1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7)	16
1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1)	16
1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0)	16
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6)	16
1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96)	16
1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9)	16
1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3)	16
1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1)	16
1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66)	16
1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0)	16
1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7)	16
1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97)	16
1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0)	16
1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2)	16
1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33)	16
1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36)	16
1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5)	16
1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2)	16
1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2)	16
1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9)	16
1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62)	16
1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4)	16
1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4)	16
1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1)	16
1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5)	16
1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2)	16
1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6)	16
1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4)	16
1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8)	16
1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5)	16
1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0)	16
1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12)	16

1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1)	16
1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81)	16
1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6)	16
1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0)	16
1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2)	17
1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8)	17
1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8)	17
1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2)	17
1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5)	17
1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17)	17
1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6)	17
1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5)	17
1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3)	17
1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1)	17
1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2)	17
1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82)	17
1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8)	17
1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4)	17
1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4)	17
1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3)	17
1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2)	17
1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4)	17
1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5)	17
1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5)	17
1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2)	17
2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6)	17
2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8)	17
2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1)	17
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1)	17
2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5)	17
2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0)	17
2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2)	17
2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56)	17
2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5)	17
2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12)	17
2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4)	17
2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4)	17
2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9)	17
2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4)	17
2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2)	17
2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5)	17
2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33)	17
2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7)	17
2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4)	17

2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8)	17
2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2)	17
2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2)	17
2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78)	17
2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5)	17
2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4)	18
2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1)	18
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8)	18
2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0)	18
2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0)	18
2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3)	18
2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31)	18
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7)	18
2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68)	18
2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57)	18
2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0)	18
2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37)	18
2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0)	18
2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6)	18
2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0)	18
2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4)	18
2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0)	18
2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1)	18
2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9)	18
2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7)	18
2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0)	18
2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3)	18
2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3)	18
2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1)	18
2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5)	18
2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0)	18
2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8)	18
2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02)	18
2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96)	18

(10시14분 개의)

○소위원장 강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개최할 때 존경하는 송재호 위원님,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님, 존

경하는 조은희 위원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된 개정안을 심사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에서도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전을 상정하겠습니다.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5)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9)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8)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6)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1)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6)
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3)
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53)
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86)
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0)
1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88)
1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2)
1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22)
1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6)
15.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4)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6)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7)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2)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7)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8)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

- 발의)(의안번호 2108726)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8)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0)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6)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9)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7)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9)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8)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5)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4)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1)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5)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0)
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15)
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3)
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7)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1)
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9)
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6)
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8)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8)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7)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96)

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0652)
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0716)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0733)
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1423)
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1537)
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1538)
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2162)
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2882)
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3293)
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3796)
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4379)
5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4985)
5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5027)
5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85)
5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5233)
5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474)
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974)
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748)
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1662)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601)
6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2570)
6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3001)
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

- 발의)(의안번호 2104552)
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050)
6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4551)
6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051)
7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4554)
7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052)
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648)
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002)
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328)
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626)
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728)
7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4823)
7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645)
7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003)
8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331)
8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730)
8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644)
8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004)
8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329)
8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627)
8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727)
8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473)
8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972)

8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472)
9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973)
9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703)
9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706)
9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5521)
9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5524)
9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671)
9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672)
9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673)
9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438)
9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426)
10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595)
10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594)
10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424)
10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433)
1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729)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060)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135)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3160)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3621)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3731)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5327)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5625)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896)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604)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935)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9544)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9911)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358)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813)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901)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751)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822)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875)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192)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546)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671)
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779)
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787)
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854)
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237)
1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442)
1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463)
1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691)
1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707)

1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8)
1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5)
1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6)
1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8)
1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3)
1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0)
1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2)
1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1)
1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1)
1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7)
1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1)
1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0)
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6)
1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96)
1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9)
1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3)
1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1)
1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66)
1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0)
1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7)
1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97)
1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0)
1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2)
1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33)
1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36)
1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5)
1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2)
1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2)
1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9)
1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62)
1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4)
1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4)
1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1)
1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5)
1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2)
1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6)
1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4)
1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58)
1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65)
1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0)
1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12)
1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1)
1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81)
1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6)
1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0)

1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2)
1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8)
1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8)
1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2)
1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5)
1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17)
1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96)
1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5)
1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3)
1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1)
1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2)
1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82)
1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8)
1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4)
1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4)
1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3)
1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2)
1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4)
1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5)
1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95)
1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02)
2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6)
2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78)
2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71)
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1)
2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5)
2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0)
2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32)
2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56)
2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5)
2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12)
2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44)
2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4)
2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89)
2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4)
2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2)
2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5)
2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33)
2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87)
2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14)
2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8)
2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32)
2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62)
2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78)
2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5)

2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4)
2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1)
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8)
2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40)
2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80)
2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3)
2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31)
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57)
2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68)
2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57)
2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0)
2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37)
2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0)
2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06)
2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0)
2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4)
2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0)
2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1)
2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9)
2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07)
2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40)
2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93)
2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3)

2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11)

2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5)

2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30)

2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8)

2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02)

2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96)

○소위원장 강병원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5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25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4-2권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된 지방세 관계법 첫 번째 주제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소위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력발전 세율 인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현행은 킬로와트당 0.3원인데 그것을 킬로와트당 1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 심사 내용입니다. 2021년 법률 개정으로 세율이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되어서 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보류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 역시 21년 법률 개정을 통해 0.6원으로 인상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이 안건은 계속 상임위에 계류시켜서 보류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7페이지입니다.

화력발전 세율 차등 부과입니다. 현행은 킬로와트당 0.6원으로 단일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일반은 킬로와트당 0.6원, LNG는 0.3원, 열병합 LNG는 0.2원으로 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 심사 내용입니다. 행안부는 연구용

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산자부와도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적정 인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 측 입장은 신중 검토입니다.

일단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세율을 다시 조정하는 부분은 지자체 세율이, 세수가 감소한다는 측면도 좀 고려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탄탄한 연구하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아마 입법의 취지는 원료 및 발전 유형에 따라서 환경오염이 상이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세를 조금 차등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연구용역이 올해 말에 나온다고 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논의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9페이지입니다.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 탄력세율 도입입니다. 현행은 조례로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가감이 불가합니다. 개정안은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 심사 내용입니다. 세율이 0.3에서 0.6원으로 인상돼서 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추후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역시 검토의견은 세수 변화,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추후 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율이 내년 1월 1일부터 인

상되어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고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1페이지입니다.

원자력발전 세율 인상입니다. 현행은 킬로와트당 1원인데요 이걸 2원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전력가격 인상 가능성 및 15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입장입니다. 원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특히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때문에 좀 신중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류하고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4페이지입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를 시설용량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행안부는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는 다른 과세 대상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앞으로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과세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신중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되었고요.

검토의견은 영구정지발전소를 원자력발전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전력가격 인상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신중 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내용은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유사합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2월 15일 날 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면 어쨌든 행안부가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들이 계속 달려 있습니다, 이 심사자료에. 그런데 검토해서 어떻더라 이런 보고는 국회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때 말씀이 있으셔서 울산 쪽하고 전북에 있는 지자체를 방문했었습니다, 5월 달, 6월 달.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수요를 저희가 의견을 들었고 원안위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었었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알겠습니다. 계속 상임위에 계류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자력발전·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자치구 교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교부대상이 시·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군·자치구로 확대하고 교부비율을 65%에서 70%로 제고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원자력·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복구 및 주민피해 지원 재정소요는 시·군·자치구 모두 동일하나 시·도에 납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조정교부금이 시·군에만 교부되고 자치구에는 불교부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교부대상 확대 관련해서는 원자력·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시설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해당 목적에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교부비율 제고 부분은 세율이 지속 인상되어 조정교부금도 함께 확대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자치구에도 재정적인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광역시하고 자치구는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특수성을 현재 안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지금 서울, 부산, 인천, 전남이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자는 입장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화력발

전소 등에 대해 그 지역을 돕기 위한 조례를 최근에 다시 준비해서 그 지역을 돕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히 김교홍 의원님 안과 신동근 의원님 안의 조정교부금 교부대상에…… 군이나 자치구나 차별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은 되고 자치구는 안 되는 것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군과 구가 어쨌든 도세라든지 기초세에 차이를 현재 가지고 있고요. 또 하는 업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재정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전체적인 재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는 또 나름대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 차관님,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군이나 자치구를 봤을 때 세목의 편중이 너무 심합니다. 물론 도에 소속되어 있는 자치구는 아직도 시골이기는 합시다마는 광역시에 소속되어 있는 자치구는 자체 재원이나 세수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목에서 특혜를 과거처럼 계속 그대로 쥐 가지고 오히려 자치단체 간에 재원의 편중이 너무 커서 불균형을 굉장히 초래하고 있다,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광역자치단체 간의, 구·군 간의 실태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과거 20년 전에 30년 전에 하던 그것을 계속 그대로 할 게 아니고 이제는 자치단체 간에 재원 교부, 특히 세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살펴서 편중을 현실에 맞게 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특광역시하고 자치구 세목을 보면 11개 지방세가 있는데요. 광역시하고 자치구는, 자치구는 2개의 세목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와 시·군·구의 관계에서는 시·군은 지금 5개 세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차이를 안고 있다 보니까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형평화 기능에서 큰 차이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한 취지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서울 마포 같은 경우도 지금 소각장 건설 문제로 주민들 반대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실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마포인데 그것에 대한 조정교부금은 마포에는 하나도 안 온단 말이에요. 다른 시·군에는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안의 구라는 이유만으로 안 되는 거고 어디는 어디어디 시의 군이라는 이유로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뭔가 좀 형평에 안 맞는, 입법에 약간 불비된 사항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입니다, 광역세고. 그런데 지역의 시설은 또 기초에 있고, 거기에 대한 약간의 괴리라고 그래야 되나,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정제도를 지금 두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서 그 조정제도 간에 정합성을 더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이것은 충분히 제도적으로 뭔가 불비한 부분을 제대로 맞춰 주는 게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고.

다들 그 지역에 그런 시설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 자치구에 들어오고 군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걸맞게 조정교부금을 주는 것은, 구라고 해 가지고 안 되고 군은 되고 이런 것은 상식적인 면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말씀하신 대로 특히 시 지역, 광역시 지역에 있어서는 그 해당 지역 뿐만 아니고 도시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 지역까지, 인접하고 있는 자치구까지 함께 보아야 되는 측면도 고려를 해 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시 전체 차원에서 이 재원을, 아까 인천시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자치단체 내에서 조정을 다시 해 줘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천에서는 나름대로 조례를 해서 그 발전지역을 돕는 특별회계를

지금 따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식 위원 잠깐만, 저……

○소위원장 강병원 예,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 지금 지역자원시설세가 광역세, 도세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광역세입니다.

○이해식 위원 도세면 그러면 인천 같은 경우는 이게 인천시로 이전을 해야 됩니까? 만일에 조정교부금을 자치구에 주려면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다 이전을 해서 인천시에서……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광역에서 기초로 주는 거니까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시·도세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 징수를 하고요, 그것을 자치구에 나눠 주게 됩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정교부금을 자치구로 주면 안 됩니까? 왜 이게 시·군만 주게 되어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재정국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식 위원 예.

○행정안전부지방재정국장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이게 돈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행·재정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자치구 사무에 이런 주변 지역의 도로라든지 주민환경개선 사업들이 사무로 돼 있지 않습니다, 시군과 달리.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가 이런 사무를 하게 되고 자치구는 이런 사무를 사무 배분상 안 돼 있다 보니까, 행정체제도 같이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가 자치구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세목도 지금은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이게 종합적으로 행·재정 체계를 같이 봐야 되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인천시가 시설세를 받아 가지고 자치구에 해당되는 것은 인천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 그러다 보면 그 사업을 하다 보면 특정 동구다, 서구다 한정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광역시에서 묶어서 하는 사업에……

○이해식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조정교부금이면 기초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쓰는 거잖아요. 일반재원으로 쓰는 건데 그 시설이

있는 지역의 일반재원을 지역자원시설세로부터 받지 못한다는 것, 다른 시군은 일반재원을 받는 데 자치구는 받지 못한다는 것 그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지방재정국장 한순기** 위원님, 아시겠지만 조정교부금은 일반세에도 있고 이것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있어서의 조정교부금을 일부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당되는 자치구가 다른 조정교부금의,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자원시설세에 한해서, 목적세인 이 세에 한해서 조정교부금으로 받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를 들면 인천시에는 목적세를 받으면 다 특별회계로 편성을 합니다. 특별회계로 편성해 가지고 서구든 동구에 지원 사업이 필요하면 그 사업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군에서 받는 그 조정교부금만큼……

○**행정안전부지방재정국장 한순기** 별도로 있지요. 그것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인천시에서 그것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행정안전부지방재정국장 한순기** 예,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수석전문위원 하실 말씀……

○**박성민 위원** 저도 한 말씀만.

○**소위원장 강병원** 예, 먼저 하시지요.

○**박성민 위원** 국장님, 지금 체계나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 사회적인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지방자치제를 하는 이유가 뭐니까. 결국에는 중앙정부 원체제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지방 간에 개성을, 경쟁력을 가지자라는 취지라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편중도 문제지만 광역시·도와 자치 시군구 간의 편중이 더 문제입니다, 사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역시·도에 계속 힘을 실을 것인가 아니면 원 취지대로 시군구에, 기초자치단체에 힘을 실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현행 제도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을 아까 차관님 말씀처럼 이제는 좀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고 형평이, 어디에 힘을 실어 주고 어떻게 세목이나 재원을 균등 있게 나누었을 때

실효성이 더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안전부지방재정국장 한순기** 위원님,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일이 있어야 돈이 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법이나 전반적으로 논의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보세요. 법률이나 제도나 행정을 쥐야지요, 당연히 돈하고 같이. 그 이야기인데 무슨 법은 없는데 권한은 없는데 돈만 자꾸 달라하느냐…… 이런 이야기 말고 같이 쥐야지요, 같이. 대폭 이양을 해야지요.

지금 행안위에도 계속 보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광역시·도로는 계속 내려보내는데 광역시·도에만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기초단체에 안 내려간다고요, 전혀. 그게 문제입니다. 지방자치제 왜 합니까, 이렇게 큰 그것을 하면서, 재원을 들여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대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차관님, 아시겠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소위원장 강병원** 좋은 의견이시고요.

수석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지금 행안부의 논리 중에서 시군 대비 자치구가 사무 범위가 좁다, 그래서 이게 조정교부금의 차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보통세라고 하면 지금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입니다. 목적세이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에 차등을 두어야 된다는 입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저도 이것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더 지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어느 지역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혐오시설이라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할 텐데? 그래서 어쨌든 설득을 해 가지고 그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거기에 재정지원도 해 주는 것이 너무나 타당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이런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수도권 이런 데는 안 하고 다 외곽으로 이런 데만 빼야 된다는 논리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쩔 수 없이 자체 내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건립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정부 측의 지금 답변이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장님, 위원님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것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랑도 다시 의견을 듣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아니,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것은, 당연히 자치구에도 그 시설이 있다 그러면 그 자치구에도 충분히 그 목적세가 가서 쓰일 수 있게 하는 게 맞지요. 그 자치구에 있는 주민들은 무슨, 뭔가 그런 혐오시설 같은 것을 죄다 받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뭔가 경제적 이익은 하나도 못 받는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군에는 주는데 자치구에는 안 준다? 어느 자치구에 있는 주민들이 이것을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부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내일 계속해서 한번 검토하고 하여튼 내일이라도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23페이지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개정안은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이고,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규정은 다양한 예외적인 소유 형태에서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재산세는 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지역자원시설세에도 함께 적용한다면 납세의무자의 해석을 둘러싼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25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신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먼저 시멘트 생산에 대한 신규과세입니다.

이개호 의원안은 t당 1000원 그리고 이형석 의원님 안은 t당 500원입니다.

지난 소위 심사 내용입니다.

석회석 채광 시 이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고 시멘트 생산 시에는 부과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업계가 지역자원시설세의 대안으로 제안한 시멘트산업 사회공헌기금도 조성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류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멘트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지방재정 확충 효과 측면과 함께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자료 26페이지에, 다음 장 보시면 시멘트산업에서 사회공헌기금을 매년 250억 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과를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별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35페이지입니다.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신규과세가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 심사 내용입니다.

원전산업 및 전기요금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서 추후 심사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원전산업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 관련 부처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여러 가지 원전에 대한 미치는 효과라든지 또 현재 업계가 많은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에 대한 고려가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상임위에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30쪽하고, 31쪽이……

○소위원장 강병원 그것은 같이 되면서 다 보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에 대한 신규과세 부분입니다.

석유류에 대해서 리터당 1원, 천연가스에 대해서 리터당 1원 이런 신규과세인데요.

지난 소위 때 행안부가 신중검토 요청이 있었고요. 검토의견 역시 지방재정 여건, 관련 부처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신규과세입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취급량 kg당 1원을 부과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지난 소위 때 행안부의 신중검토 요청이 있었고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여건, 관련 부처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가 2월 15일 소위 심사내용에 보면 유해물질의 범위 특징이 곤란하다는 점 이게 정부 측 신중검토 의견 중에도 하나의 논거였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그런데 유해물질이랑 유해화학물질은 법으로 이렇게 규정돼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화학물관리법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범위를 특징이 곤란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이

것에 따른 무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지만 물질의 범위 특정 곤란하다는 것은 논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런데 특정도 어느 정도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유해물질.

○소위원장 강병원 그럴 수는 있겠네요. 광범위하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보류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69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그래서 67페이지도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보류하는 것이고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예.

○소위원장 강병원 69페이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물류화물에 대한 신규과세입니다.

세율을 화물 t당 3000원, 납세지는 시군으로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지난 소위에서 행안부에서 중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여건, 관련 부처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류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75페이지입니다.

풍력·태양에너지발전에 대한 신규과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행안부가 해외 사례, 업계 담세력 등에 대한 연구를 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고요. 보류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여건, 관련 부처의 입장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행안부가 그사이에 해외 사례나 업계 담세력 등 연구한 게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연구를 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진행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진행 중이다 이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82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78페이지도 함께 넘어가네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예, 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신규과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울을 폐기물 매립량 t당 5000원을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폐기물 소각시설·매립시설 중 후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 및 업계 추가부담 등에 대해서 신중검토 요청이 있었고 보류되었습니다.

역시 지방재정, 관련 부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은 없으신 것 같고, 그러면 폐기물 소각시설에는 하는데, 한다고 그러면 매립시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지방세제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을 하게 되면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예.

○**이해식 위원** 소각시설에는 안 한다는 얘지요, 지금도?

○**소위원장 강병원** 안 하고 있군요, 소각시설에?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지금은 두 개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글썄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 같은데요.

○**소위원장 강병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보류해서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89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톤당 4000원 이렇게 부과하는 안인데 지난 소위에서 앞의 부분하고, 매립시설하고 소각장이 묶여 가지고……

○**소위원장 강병원** 그러네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한쪽만 해 줄 수 없다었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둘 다 해 줄 수도 있다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보류되었고요. 지방재정 또 관련 부처,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소각시설이나 매립장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생각만 한번 들어 보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시설들에서 주민들이 엄청난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것이 시군이든 자치구든 그분들에게 뭔가 조정교부금으로 갈 수 있다라 그러면 그 반대했던 주민들에게 뭔가 경제적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큰 틀의 정책 변환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것은 일단 시설을 설립할 때는, 만들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여기의 내용들은 폐기물들, 그 후에 운영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소각시설에 대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심플하게는 어쨌든 그 부담을 주민들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현재도 이 부분들이 폐기물 부담금이라고 해서 별도 부담금들을 내고 계시고 그 지역에는 또 마을 단위 기금들을 시설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그러면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할 것인지의 고민이 하나 있고요. 현재 여러 가지 시설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부담금이 라든지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예,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지요?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 94페이지입니다.

별도 세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핵연료에 대한 신규과세입니다.

지난 소위 심사 내용입니다. 원자력발전예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 검토 요청이 있었고요. 보류되었습니다.

역시 지방재정 관련 부처 입장을 종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보류해서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설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현행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상현·이상민 의원안은 19.42%로 상향하는 것이고요. 박성민 의원님 안은 내국세 총액의 19.30%를 재원으로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재원이 0.18% 그리고 박성민 의원님 안은 0.06%가 확보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부할 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에 배분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는 시군은 제외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용추계가 5149억 원 그리고 24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표에 보시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 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설정한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수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전사고 위험지역임에도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교부세 재원을 확대하고 증가된 재원을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자체의 재정 소요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의 지리적 특성 및 내국세 감면에 관한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까지 다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1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윤준병 의원안인데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과세를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현행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원자력발전의 발전량 기준으로 kW당 1원을 부과합니다. 이에 대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원자력발전의 발전 기준을 kW당 0.5원을 부과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자체의 재정 소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의 지리적 특성, 발전업계의 부담 및 관련 부처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상 세수 변화를 보시면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면 580억 정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지난 두 번의 소위가 있었는데요.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0.5원이 과도하다면 0.3원과 같이 조금 낮추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냐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기본적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의무로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우선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126페이지에 한번 가지겠습니다.

12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안과 지역자원시설세를 수정하는 안이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공통 취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안전교부세는 내국세의 일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 이용자·발전자에게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혜지가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23곳,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는 광역 3곳, 기초가 4곳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원자력 관련된, 지역 자원시설세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원자력안전교부세 관련해서는 내국세의 비율의 어떤 변화가 있다 보니까 재정 당국과 상당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교부세라는 게 사실은 전국 단위에 다 적용되는 일반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이 있는 몇 개, 일부 지자체에만 교부세가 가는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에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넣어 포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면 조세역진성이 발생을 해서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지역에 돈이 더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주로 경남에 있는 양산에 굉장히 돈이 많이 가고요. 오히려 울산이라든지 이쪽은 재정적 이득이 없는, 그렇게 시뮬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 안도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 차관님, 지방교부세를 필요한 데, 또 꼭 지원을 해야 되는 데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에 원자력이 24기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박성민 위원** 고리에 5기, 울산 울주에 2기, 경북 경주에 5기, 경북 울진에 6기. 전남 영광의 6기를 빼고 나면 공교롭게도 이게 울산을 둘러싸고 원전이 전체적으로 18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다섯 군데 원전발전소가 소속되어 있는 자치단체만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소속되어 있는 자치단체만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울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언양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붙어 있는 울산 남구보다도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해당 지자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이후에 원자력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지정이 되면서, 30km 안에는 울산광역시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오히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울주군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쪽만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게 형평에 안 맞다, 첫째.

두 번째는, 30km 안에 들어 있는 지자체는 정

부에서 해야 되는 이런 업무를, 예를 들어서 훈련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2014년 이후로 8년 동안에 많게는 1년에 1억 정도씩을 정부 업무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비상계획구역을 지정하지 말아야지 지정을 해 가지고 오히려 업무만 부담시키고 일만 시켜 놓고 돈은 지원 안 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박성민 위원** 그래서 국가사무가 따라가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예산 지원도 되어야 되는데 국가사무만 일만 시켜 놓고 예산 지원은 오히려 엉뚱하게 과거에 지정되어 있는 5개 자치구만 지원을 한다.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다 그런 취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용 추계해 보면, 23개 지자체가 반경 30km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가 2400억 정도 되고 그게 해당 지자체별로 나누면 100억 정도씩 1년에 돌아가는데 그렇게 해도 인구 비율로 보면 1인당 4만 6000원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현재 5개 해당 지자체에 지급되는 돈을 보면 1인당 59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개의 기장·울주·경주·영광·울진에 한 해에 4300억, 연간 지금까지 10년간 1조 7000억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자치단체 간에도 이게 어느 단체는 지원이 되고 어느 단체는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재정 격차가 너무 심해서 사실은 행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군은,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군이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세목도 많은 데다가 이런 돈까지 1년에 1000억씩 받으니까, 그래서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경 30km 이내에 최소한의, 너무 기재부에서…… 이것 전부 다, 행안부도 동의를 하고 전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행안위원장님 다 동의를 하는데 기재부만 굳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 반대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입법기관이고 또 우리가 당연히 이런 것은 맞춰 줘야 됩니다.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하더라도 최소 금액으로 하자고 하는 거니까,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안보다도 대폭 줄여서 하는 거니까 이번에 꼭 좀 신경을 써서 헌법에 규정된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님께서 원자력 여러 가지, 기초자치단체의 여러 입장을 잘 말씀해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어췌든 내국세의 큰 변동, 뭐 약간입니다만 그래도 변동이 있는 부분이어서 기재부랑 충분한 협의가 조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협의가 아니고 기재부를 설득시켜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소위원장 강병원** 맞는 말씀이십니다.

○**박성민 위원** 이게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을 정하지 말든지, 후쿠시마 원전 터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30km 정해 놓고 거기에 훈련시키고 뭐 하고 별의별 것 다 의무를 부담시켜 놓고 예산편성은 안 해 주고.

아까 재정국장 이야기한 그 말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게 업무를 쫓으면, 일을 쫓으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만 주고 돈은 안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풀어 가지고 제대로 형평을 맞춰야지요.

○**행정안전부지방재정국장 한순기** 위원님, 제가 답변……

○**박성민 위원** 예.

○**행정안전부지방재정국장 한순기** 지방재정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자치단체 재원이 보충되고 확충되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늘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목적과 내용에 따라서 저는 재원이 확충·보완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원안위가 지정하고 승인하는 일이다 보니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정 목적과 특정 용도에 맞게끔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교부세 같은 경우는 그런 목적하고는 저는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교부세는 여러 가지 재원 보충 또는 불균형 해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방향과 목적에 맞는 국비 확충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민 위원** 교부세가 예를 들어 불균등한 지역에 형평을 맞추는 세라면 이게 그러면 형평이 불균등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안전부지방재정국장 한순기** 형평의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용도, 특정 지역에……

○**박성민 위원** 용도가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안전부지방재정국장 한순기** 그러니까 특정 용도, 특정 지역에 대한 거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소재 지역만 지원하고 30km 거리는, 방사능이 해당 지자체의 경계 따라갑니까? 30km 지정을 하지 말든지, 그러면, 30km 지정을 해 가지고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는 해당 지자체만 지원하고 가까이 있는 다른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형평에 맞습니까?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을 지정을 안 해야지요.

○**이해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소위원장 강병원**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 박성민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교부세라고 하는 것 비율을 이렇게 묶어 놓고 참여정부 이후에 19.24%가 변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기재부는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교부세율을 올려 줘야 지방재정이 조금 더 나아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아마 원자력안전교부세라고 하는 어떤 목적교부세를 설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견해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만일 그렇다면 지금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시·군 조정교부금을 늘리는 것 그리고 아까 앞서 우리가 시·군 조정교부금을 자치구로 확대하자라고 하는 그런 안을 차관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울산 같은 경우는 군도 있고 그리고 자치구가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법안도 좀 개정을 하고 이것도 지역자원시설세의 시·군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65%에서 75%로 늘린다는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진석 위원** 제 의견은……

○**소위원장 강병원** 문진석 위원님.

얘기를 듣고 하셔도 되는 것 아닐까요? 정부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문진석 위원** 저도 제안을 드리려고……

○**소위원장 강병원** 문진석 위원님,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이게 시군구 지역으로 이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불평등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자력방사선 피해가 있다는 전제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이렇게 부과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울주 언양, 저 먼 거기보다 울산 남구가 더 피해를 본다고 한다면, 가깝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불평등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불공정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시군구로 딱 못 박아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반경 거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지역자원시설세는 일단 광역세, 도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 틀에……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 틀에서 계속 생기는 문제입니다.

○**문진석 위원** 그 틀에 묶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구 주민들은 사실은 불만이 많을 것 같아, 당연히.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소위원장 강병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까 김교홍 의원님과 신동근 의원님이 했던 안에 자치구를 넣는 문제가 되면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방사선비상계획 안에 있는 자치구가 있다면 그곳에도 이렇게 지역자원시설교부세 갈 수 있게끔 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윤준병 의원님 안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는데, 그러면 울산에 있는 자치구는 혜택을 못 받게 되지요.

○**박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 받든 받든 정부 입법으로 할 수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입법으로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원전 해당 지자체만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건 그전에 생겼고.

이제 후쿠시마 생기면서 이것을 반경 30km로 늘려 가지고 반경 30km 안에는 훈련도 하고 대비도 하고 인력도 배치하고 여러 가지 국가사무를 맡겨 놓고 예산 지원은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 형평을 맞춰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말입니다, 지금.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윤준병 의원님 안처럼 지역자원시설세가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해당 시군으로 교부되면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강병원** 맞습니다. 해결됩니다.

○**이해식 위원**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시군 플러스 자치구까지 포함하면 울산 내 자치구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된다는 거지요.

○**박성민 위원** 예.

○**소위원장 강병원** 그렇게 해도 되고, 방사선비상계획 안에 있는 시·군·자치구까지 포함되면 또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정부 의견 어떠세요? 그 정도는 보니까……

지난 23일, 2월 15일 소위에서 그리고 5월 10일 소위에서 상당히 많이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 그때 우리 김교홍 소위원장님께서서는 걱정한 수준에서 타협을 해서 의결을 하시려고 했던 모양인데요. 이 정도는 정부가 고민을 하셨을 테니까 나름대로 논의를 마무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정부?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원전 소재지를 풀어야 됩니다, 원전 소재지.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단 말씀 주신 안을 가지고 굉장히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원전 소재지, 원전이 없는 곳, 예를 들어서 제가 경남을 말씀드렸는데 그쪽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원전 소재지에 있는 돈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돈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래서 원전이 없는 지역에 돈이 가고 원전이 있는 지역에는 오히려 돈이 줄어드는 배분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조정을 하게 되면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줄어드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지금 계속 이 법안들이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차관님의 고민 충분히 이해할게요.

그러면 이런 방안을 찾아보세요. 소재지와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교부금의 역진이 안 생기게끔 소재지에는 좀 더 주어서 역진이 안 생기게끔

하는 방안으로 하게 되면 방사능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이런 데들도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박성민 의원님 안처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뭔가 추가적인 역할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재지와 구역의 역진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그러면 차등을 약간 뒀 가지고 역진이 안 생기게 하시면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수용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강병원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 차관님, 소재지라는 그 말 자체가 저는 불공정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원전 소재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남에 들어간다면 월성원자력에 가까이 있는 양산 같은 이런 지역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원전은 소재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30km 이내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것을 정해…… 원자력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라고 그 구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공중으로 날아가는 방사선을 소재지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서 오히려 원전이 속해 있지 않은 소재지에도 혜택이 가면 그게 불공정하다, 그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전 소재지 또는 거리도 넣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재지도 넣고 거리도 넣고 해야지…… 소재지가 그러면 양산이 사실은 엄청 가깝지요, 월성원자력하고. 그런데 경남이라고 해서 소재지가 거기 행정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거기는 지원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남 양산이 비상계획구역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첩돼서 들어오다 보니 돈이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경남이 그러면 255억 원 가져가게 되고요, 울산은 187억으로 작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 30km 안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제도로는 여기를 만족시키는 답을 저희가 찾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낸 안은 그래서 차등을 두자는 거거든요. 원전 소재지는 기존의 받는 것을 그대로 받지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30

km 안에는 최소한의, 10분의 1이라도 지원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얘기는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우리 국회의 뜻은……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행정안전부지방재정국장 한순기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계속 일의 성격을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정은 원안위가 지정하고 원안위가 지원하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강병원 그 얘기는 충분히 됐어요.

○행정안전부지방재정국장 한순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소위원장 강병원 됐어요.

○행정안전부지방재정국장 한순기 2024년 법 부칙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됐어요, 됐어요. 퇴장 조치하기 전에 그만하세요.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오늘 오후도 되고 내일 오전도 되고 윤준병 의원님 안도 있고 거기에 자치구를 포함하는 것까지 해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어쨌든 정부가, 역진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 역진이 안 생기게끔 하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방법까지 고민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랫동안 논의해 왔고 의견들이 다 모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재원을 할 건지, 정말 kWh당 1원을 할 건지 아니면 정말 지난번에 소위에서 모아졌던 것도 0.2원, 좋습니다.

어쨌든 한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시·군·자치구까지 다 포괄될 수 있게끔 짜세요. 짜 가지고 오늘 오후라도, 내일 오전이라도 해서 이것은 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28페이지 부칙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이사항은 없는데요.

현행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납세의 무자에 대한 적용례는 저희가 일반적 적용례를 둔다고 하면 굳이 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위 심사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제5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소위 자료는 총 세 권입니다.

소위 자료 중에 5-1권의 첫 번째 주제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소위 자료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목차 1페이지가 아니고 많이 지나가시면 개관 부분이 나오거든요. 거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다음이 되겠습니다.

개관을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정부 제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표인데요.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76건 특례의 일몰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23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내용은 44건이 되고, 총 감면 규모는 2조 266억 원입니다. 표에 보시면 단순 일몰 연장이 33건, 연장 및 조정이 7건, 종료가 4건, 신설이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2조 988억 원의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일몰기한의 설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3년 이내 기간을 정해 왔음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최소납부세제의 의미와 적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소납부세제는 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면세세액의 15%는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면세액이 취득세 200만 원, 재산세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여 국민개세주의, 조세 형평성 가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만 장애인 또 국가유공자 등 국가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과 종교, 국가귀속용 부동산 등 공익성이 매우 강한 분야는 예외적으로 최소납부

세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내용 중에 최소납부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는 안이 몇 건 있겠습니다.

왼쪽 표에 보시면 최소납부세제 적용 현황에 대해서 54건이 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 54건은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를 두는 규정들이 있겠습니다. 이 규정들의 경우에는 27건인데요 여기는 전액 면제돼서 15%도 부담하지 않는 사업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특례의 원칙 부분인데요.

법 2조의2에 지방세 특례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이 여덟 가지 원칙을 가중치를 두셔서 판단해 주셔야 될 거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국가의 경제·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여도, 세 번째 조세의 형평성, 네 번째 조세부담능력, 다섯 번째 대상자 및 세목의 구체성과 명확성, 재정 여건, 그다음에 중복 최소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 설정의 최소화입니다.

이 중에서 조세의 형평성 부분과 7호 특례의 중복 최소화 부분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의 형평성이 이 특례 심사하심에 있어서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될 텐데요. 먼저 대상지역을 가지고 조세의 형평성이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지방대학의 수익용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한정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다음, 5페이지입니다.

어떤 사업수행자의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비영리 재단법인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과세 특례의 경우에는 민법상 설립된 재단법인 중 종교단체에 한해서는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취득세 30%, 재산세 50%인데요. 같은 재단법인인데 종교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조세의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자산규모로 나뉘는 경우가 오늘 논의하시는 내용 중에 있는데요.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입니다.

이게 자산규모에 따라서 차별성을 두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맞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타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과세 특례 부분인데요.

일반물류단지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받는데 반해서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취득세 감면 부분에 있어서는 창업보육센터가 학교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학교 밖에 있는냐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면 내용에 차등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부분인데요.

국가·지자체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례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 특례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를 감면을 받는데 역시 또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원이 두 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총칙으로 가겠습니다.

총칙은 2개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10페이지의 정의 부분입니다.

직접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개정안은 직접 사용의 범위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편법적 토지 취득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 측에서 신중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편법적 토지 취득 수단 악용 우려 부분인데요. 취득세를 감면받고 착공 후 공사 지연을 사유로 해서 건축 중인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한 후에 토지를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누리는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취득세 추정 배제 사유인데요.

감면 대상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공사 지연이 발생 시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서 추징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신중 검토하고 계속 소위에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부분입니다.

표를 보시면 현행은 공익, 특정 지역 지원, 감염병 지원 등 열거 사항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해서 2항에서는 제한되는 부분, 골프장·고급오락장 등 중과대상과 또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 초과 시 삭감 시기를 다음 연도로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정부안의 경우에는 가능 범위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로서 일반적 허용으로 바꾸었고요.

제한대상 예외 사유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로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를 조례로 감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시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바꾸었고요.

한도 초과 시 삭감 시기를 다음 연도가 아니라 다음 다음 연도로 수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4페이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사유 확대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는 조례 감면의 자율성 확대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해 보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만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 조례 감면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사유를 확대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범위를 축소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복리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로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조례 감면입니다.

감염병으로 영업이 금지된 경우만 조례 감면이 가능해서 재난 피해로 영업 불가 시 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평상 타당해 보입니다.

조례 감면 불가사항 시행령 위임입니다.

현행법이 고시에 위임한 조례 감면 불가사항을 현행 시행령에서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고시보다는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법제적 측면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 조례 감면 총량한도 초과 시 감면 시기 조정은 총량의 초과 여부 확인은 지자체의 결산 시점인 익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 해 감면규모 조정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부칙은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적용례를 두고 있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안입니다.

일단 보면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서는 15페이지 상단만 수정의견이 있고 나머지는 정부안을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전문위원의 수정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은 24페이지의 농어업을 위한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27페이지, 자경농민의 농지, 농지조성용 임야, 농업용시설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정점식 의원안은 감면 대상자에 후계농업인·청년농업인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의 경우에는 2026년까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정부안에는 농지조성용 임야에 대해서도 의무 사용기간 2

년의 추정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진석 의원님 안은 취득세 감면율을 55%로 확대하는 내용과 감면 일몰기한이 27년까지로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몰기한 연장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왔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면율 상향 부분은 지방세 특례의 원칙 부합 여부 그리고 어업인, 임업인 등 유사 감면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9페이지, 후계농업인 등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은 자경농민의 범위를 후계농업인 등으로 확대하고 후계농어업인에 대해서 감면율을 상향하는 안이 되겠는데요.

후계농업인 이 부분은 농업을 경영할 의사만 있어도 해당하게 돼서 감면 대상자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0페이지, 농지조성용 임야에 대한 추정 규정 보완입니다.

현재 감면 대상은 세 가지로서 ‘해당 농지를’ 표현을 삭제해서 농지조성용 임야에도 동 추정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부칙은 정부안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자경농민이 경감받은 취득세의 추정에 대해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정 규정에 침익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을 듣기 전에, 일몰기한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3년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타당성을 들어서 좀 더 논쟁을 하고 논의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3년으로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우선 정부안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일몰기한 연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점식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후계농업인으로 개념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후계농업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 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후계농업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확히 농업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진석 의원안은 임업인까지 고려하자는 건데요.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도 신중 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농지, 농지조성용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2건의 개정안은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와 관련해서 박덕흠 의원안은 감면 대상에 임야를 포함하려는 것이고요. 정부안은 농업용시설 등에 대한 추정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에 대한 감면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는 부분은 농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을 받게 되겠습니다.

더해서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임야에 대해서 임업후계자 등 별도 감면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귀농인에 대한 감면의 추정 규정 보완입니다.

농업용시설도 농지, 농지조성용 임야와 마찬가지로 추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자경농민, 농업법인 등 유사 감면과의 형평성 고려 시 추정 규정 마련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사유 삭제는 의무사용기간인 3년 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추정토록 보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 추정 규정과의 체계에 비추어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부칙도 추정 규정의 침익적 효과를 고려했을 때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의견은 충분히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부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10건의 개정안은 농업기계,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2년도 감면 규모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통상 일몰기한의 설정은 3년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년 연장하는 결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46페이지,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입니다.

개정안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임업후계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을 ‘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준보전산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전산지는 공익적인 가치가 크고 산지전용 등의 산지 형질변경 시 산지관리법에 따른 제한이 가해지나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위 제한이 없고 그 규모도 전체 산지면적의 21%에 이르는 점을 감안합니다.

또 투자 가치가 없는 보전산지에 대한 취득 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현재 감면 대상인 보전산지와는 행위 제한 등에 있어서 공익성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 고려해 주시고요.

아울러 이 조항은 일몰이 25년도에 도래하게 됩니다. 그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현행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48페이지, 자영업민 등에 대한 감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10건의 개정안은 자영업민의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49페이지, 일몰기한 연장 및 감면을 상향입니다. 통상 3년 이내로 설정해 왔음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면을 상향 여부에 관해서는 농업인, 임업인 등 유사 감면 대상자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후계어업인 등으로 감면 대상 확대하는 부분은 자영업민의 범위를 후계어업인 등으로 확대하고 감면율을 10%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역시 농업과 마찬가지로 경영할 의사만 있어도 해당이 돼서 감면 대상자가 광범위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현행대로, 3년 연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8건의 개정안은 농업법인의 농지, 농지조성용 임야, 농업용시설 및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일몰기한 연장은 역시 3년이 통상적이고요.

일부 자구 수정은 농업법인에 대한 정의 규정 이전부터 ‘농업법인’ 용어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안 의결을 희망합니다. 3년 연장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3년 연장과 일부 자구 수정

하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소위원장 강병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57페이지,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입니다.

8건의 개정안은 어업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어업법인에 대해서도 농업법인과 동일한 감면요건을 설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몰기한 연장은 역시 3년이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일몰기한 연장은 이제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감면을 상향 부분입니다.

이건 농업법인 등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감면요건 신설 부분입니다.

어업경영정보등록제도에 따라 감면 대상자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점 그리고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1년간 어업법인이 어업경영정보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가 제출한 내용 의결을 희망드리고요.

나머지 유사 법인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감면요건 신설에 대한 의견은 됩니까? 58페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현재 어업경영정보등록을 해수부와 농림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되신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등록된 농어업법인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건데요. 현재 한 7만 7000개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등록만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아닌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63페이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될 부동산을 한국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종전부동산 매입·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구획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재산세 면제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매입·개발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서 혁신도시특별회계에서 종전부동산 매입 등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형태로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 국가·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의 경우 24년 일몰이 도래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의견처럼 이게 24년도에 일몰이 도래합니다. 그때 함께 보아도 될 것 같고요. 아울러 혁신도시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현재 제세공과금을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그러면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66페이지, 농협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등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의 개정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행은 감면 대상이 중앙회 구매·판매 사업용, 생산·검사 사업용, 농어민 교육시설용으로 되어 있고요. 감면 내용은 취득세·재산세 25%입니다. 일몰기한은 23년 올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진석 의원님 안은 취득세·재산세 30%로 상향하는 것이고요, 일몰기한을 29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송재호·김교홍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감면 대상을 농협경제지주 플러스 자회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안의 경우에는 농협 외 중앙회와 농협중앙회 그리고 농협경제지주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의 경우는 농어민 교육시설용에 대해서 그리고 지주회사의 경우는 구매·판매 사업용, 생산·검사 사업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감면을 상향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 특례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68페이지입니다.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한 감면 신설 부분입니다.

농협경제지주는 농협중앙회가 수행하던 구매·판매 사업 등을 분할해서 12년에 신설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수산업협동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와 동일하게 농업인을 위한 구매·판매 사업 등을 수행하므로 타 조합중앙회와의 형평성 그리고 농업 보호·육성·지원의 필요성 차원에서 감면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 사업의 유형인 구매·판매, 생산·검사, 농어민 교육시설 중 1·2 사업은 농협경제지주에서 수행하므로 정부안은 농협경제지주에는 1·2 사업에 대한 감면을, 중앙회에는 3에 대한 감면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농협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개정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69페이지입니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면 신설 부분인데요. 자회사 중 유통자회사의 경우는 현행법에 따라 취득세·재산세의 50% 감면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별도 감면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 측은 정부안 의결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의 구매·판매, 생산·검사는 농협경제지주회사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76페이지, 지역농협 등 고유업무용 부동산입니다.

13건의 개정안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통상 3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은 됐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통상 3년 연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81페이지, ‘라’의 사회복지 위한 지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8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대상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기량 기준 완화 부분입니다.

과거보다 차종 및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조장비가 더욱 다양화된 점, 배기량 기준이 저가 승용차와 고가 승용차를 나누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점 등 고려 시 개정안은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차종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지자체의 주요 세입원으로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과의 형평성 그리고 일몰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신중 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아직 일몰이 도래하지 않았고 국가유공자하고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88페이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정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올해 3월 14일 법 개정에 따라서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어린이집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추정 규정이 적용됨과 달리 위탁 운영 부동산에 대한 별도의 추정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보완 필요성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추정 규정의 침익적 효과를 감안할 때 타당한 경과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92페이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8건의 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9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직접 사용의 명확화 부분인데요. 현행법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특례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설치·운영’을 ‘직접 사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95페이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9건의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면을 상향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 특례의 원칙 부합 여부, 사회

복지시설 등 유사 감면 대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의 직접 사용 명확화 부분은 ‘설치·운영’을 ‘직접 사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과세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00페이지,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6건의 개정안은 스카우트주관단체 등 청소년단체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비영리법인의 청소년수련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감면을 상향 부분입니다.

역시 특례의 원칙 부합 여부 그리고 유사 감면 대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04페이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표를 위원님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면요건을 보시면요, 현행은 18세 미만 3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 대상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면 내용은 취득세 100%입니다. 다만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 원 한도로 되어 있고요. 일몰기한은 24년입니다.

여기의 감면요건에서 18세 미만 2자녀 또 24세 이하 2자녀 또 18세 미만 3자녀 또 18세 미만 1자녀 등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고요. 감면 대상에 있어서도 현행과 같은 의견이 대다수이시긴 하지만 ‘1~2자녀는 승용자동차만 감면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부분입니다.

다자녀의 수와 연령 등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효과성,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추세 또 기준의 적정성,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동차세 감면 신설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 자동차세 감면 대상이 한정적인 점 그리고 자동차세가 시·군세로 기초지자체의 주요 세입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6인 이하 승용자동차 감면 한도 상향 부분은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 다자녀 양육자 이동 편의성, 유아용품 탑재가 수월한 다인승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에 비해 다자녀 가구의 활용성이 낮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에 한번 여쭙고 싶은데 이게 일몰기한은 도래하지 않았으나 감면요건에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어쨌든 우리 출산을 제고, 인구 감소가 굉장히 긴박한 우리 국가 난제이기 때문에 해결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저도 조금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자녀 수를 확대하는 부분의 통계만 먼저 말씀드리면 현행은 한 480억 정도,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480억이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두 자녀 이상이 되면 2800억 원, 한 자녀 이상으로 가게 되면 아마 4800억 원의 세수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돼 있습니다만 기초 쪽의 굉장히 중요한 세원이기 때문에 이 점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일몰기한이 미도래했기 때문에……

○이성만 위원 (손을 들)

○소위원장 강병원 예, 이성만 위원님.

○이성만 위원 이것 자체에 대한 의견이 있다가 보다는 지방세 감면 전체에 대한 의견인데요.

이것은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요. 예를 들자면 이 문제를 따지면 출산 문제가 절실한 자치구가 따로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자치구가 따로

있고, 지방세 감면을 했을 때 오는 충격의 정도가 또 다를 수 있고요. 앞서서 얘기했던 농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농업을 어느 정도 주류로 삼느냐에 따라서 충격의 정도가 다 다르고 상황이 전부 다 다릅니다, 또 이익의 규모도 다 다르고.

이게 조세법률주의라고 그래서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정리해 내면 결국은 자치단체의 자율성 자체도 없어지고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조세가 감면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를 해서 넘겨주되 해당되는 범위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정도의 문제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가지고 가야 지방자치단체도 발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가 이 오만 가지 사항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차원에서 법률체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지금처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했을 때는 절실한 데는 제대로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데는 막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면 시스템에 대한, 조세법률체계 자체를 좀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조례를 통해서…… 아까 수정해 주신 내용은 ‘주민 복리와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내용을 넣으셔서 조례 감면이 가능하도록 폭을 굉장히 넓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항들은 조례 감면으로 충분히 반영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에 이 개정을 해 주시게 되면.

○**이성만 위원** 건 바이 건으로 지금 정하고 있잖아요.

○**문진석 위원** 그러니까 다자녀를 3명으로 하나 2명으로 하나 이것도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게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만 해도 다자녀로 인정을 하고 지원을, 감면해주겠다’ 이런 정도는…… 법률로 굳이 3명을 이렇게 규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요. 다자녀로 규정해 놓고 2명, 3명 이렇게……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 조세체계는

아니지만 주거안정이라든지 공공요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별로 다자녀 체계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조세체계이기 때문에 다자녀 체계에 있어서 조금 늦게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지금 다자녀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내년에 이 사안이 일몰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고려,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식 위원** 이미 지금 다자녀는 기준을 2자녀로 낮춘 거잖아요, 정부도.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방향은 정해졌습니다마는 각 사안별로 아직 달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향은 2자녀로 가는데 차관님 말씀드렸듯이 세수 감소가 큰 폭으로 있기 때문에……

○**문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법률체계로, 법으로 다자녀를 2명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아니, 지금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두 명도…… 한 명도 다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소위원장 강병원** 하여튼 위원님들의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문진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하는 게, ‘조례로 판단해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강병원** 충분히 됐고요. 그러면 이것은 일몰기한이 미도래했으니까 현행대로 하고요.

정부도 우리 위원님들 하셨던 말씀을 한번 새겨서, 내년에는 일몰기한이 왔기 때문에 또 이것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그럴 때 뭔가 진전된 안을 한번 가져오신다 그러면 많은 진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은 122페이지거든요. 122페이지지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예.

○**소위원장 강병원** 그런데 이 안건은 좀 논쟁도 있고 논의도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심사가 계속 중이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정우택 위원 우리 2시에 의총이 있어요.

○소위원장 강병원 국민의힘, 여당에서 2시 의총이 있어서 오후 3시에 속개를 해야 되는데, 한 2시 반에 나오실 수 없어요?

○정우택 위원 2시 반쯤 하지요.

○소위원장 강병원 박성민 위원님, 도장만 찍고 2시 반에 나오시지요.

○박성민 위원 예.

○소위원장 강병원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5-1권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위원님들, 122페이지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면 대상자를 보시면 김교홍·윤재갑 의원안은 18세 미만 1자녀 이상을 둔 사람입니다. 신동근 의원님 두 안은 18세 미만 3자녀를 둔 사람이고, 정부안은 24년에서 25년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내 취득하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감면요건을 보시면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신동근 의원안에서는 시가표준액 9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수는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차이가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하느냐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이 또 3년 내, 3월 내로 차등이 있습니다. 거주 의무는 동일합니다.

감면 세목이 신동근Ⅲ 의원안 재산세 외에는 다 취득세가 되겠고요. 감면 내용도 보시는 바와 같이 100%에서 30%, 10%까지 차등이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김교홍 의원님 안하고 윤재갑 의원님 안은 차등 감면을 합니다. 1명일 때 10%, 2명일 때 20% 이렇게 차등 감면을 하고

요. 감면 한도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500만 원의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납부세제의 경우 정부안의 경우는 적용을 배제해서 전액이 면제되는 게 되겠고요. 일몰기한은 정부안이 2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은 용혜인 위원께서 정부안에 따르면 주택 가격 및 유·무상 취득을 불문하고 감면을 적용하는 점, 취득세 500만 원의 감면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의 출산 여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소득·고자산 계층에 감세 혜택이 확대되는 정책이라서 정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그리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 지원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감면 신설 여부입니다.

신동근 의원님 안인데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효과성 또 재산세는 기초지자체의 주요 세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면 대상자에 있어서 김교홍·윤재갑 의원안과 정부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이기만 하면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신동근 의원안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게 적용돼서 감면 대상자에 대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의 경우 24년부터 25년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 1년 전, 출산 후 5년 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의 적정성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면요건에 신동근 의원안은 감면이 적용되는 주택 가격을 시가표준액 9억 이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설정 여부 및 적정 가격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존 보유 주택 여부와 관련해서 1가구 1주택에 김교홍·윤재갑 의원안은 일시적 2주택자 중 3년 내에 1주택이 되는 가구를, 신동근 의원안은 일시적 2주택자 중 3개월 내에 1주택이 되는 가구를, 정부안은 일시적 다주택자 중 3개월 내에 1주택이 되는 가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감면 내용 및 감면 한도입니다.

김교홍·윤재갑 의원안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하여 감면율을 설정하되 감면 한도가 없고 신동근·정부안의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하되 500만 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습니다.

최소납부세제 적용 여부입니다.

신동근·정부안은 취득세를 100% 면제하되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데 신동근 의원안은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 감면액의 15%를 과세하고 정부안은 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정부안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의 부모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1주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128페이지 조문대비표를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을 한번 읽어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6조의5가 되겠습니다. 정부안입니다. ‘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이고요. 2호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일시적 2주택자 관련해서 동일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항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역시 1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유례없는 출산율 저하에 도움이 되고자 파격적인 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어쨌든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서 취득세를 500만 원 감면 한도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지난번 상임위 대체토론 과정에서 용혜인 위원이 이게 고소득·고자산 계층의 감세 혜택이 확대되는 정책이다라는 의견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관께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500만 원을 둔 것은 일단 수도권·서울 지역에 있는 중위 주택 정도를 계산한 것입니다. 세율이 1%라고 치면 5억짜리 집까지가 1%이기 때문에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도 자체는 일단 한시적으로 25년까지만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고소득자를 위한 그런 제도 설계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조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차관님, 다 좋은데 왜 2024년부터 25년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이것은 결국 다 한시법인데요. 생애최초주택이 25년도에 같이 완료가 됩니다. 주택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일정을 그때 같이 맞춘 상황입니다. 생애최초주택에 대해서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25년 이후로는 저출산도 없고 생애최초주택도 필요 없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이게 특례법이다 보니까 매년 3년 단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2025년에 또 법안을 만들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논의하시는 것처럼 계속 연장, 연장이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문진석 위원님.

○문진석 위원 용혜인 위원의 지적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계층구조 속에서는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나이에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식보다는 뭔가 다른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이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용혜인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성이 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이게 자칫하면 정말 고소득·고자산에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합니다.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위원님 지적 공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00만 원 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억 아파트를 구입하면 산출세액이 3000만 원이 되는데요. 500만 원을 공제하면 2500만 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감면율이 1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택인, 10억보다 훨씬 낮은 5억을 매입하면 500만 원이 납부세액이 되고 전액이 100% 공제가 되기 때문에 감면율이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주택일수록 더 감면 혜택을 많이 보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진석 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아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5억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계층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20%도 채 안 될 텐데 그들한테만 이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요. 결국은 지방세 재정은 줄어들면 모두의 부담이고, 부담은 모두가 지는 거고 혜택은 그런 계층만 보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님, 저희가 좀 유사한 규정이 생애최초주택 구입할 때 취득세를 지금 면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25년도까지. 거기에서는 주택을 취득 당시 가액 12억 원까지만 고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산 관련 주택도 이 조항과 유사하게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진석 위원** 사실은 생애최초주택 구입했을 때 취득세 감면도 저는 저출산 정책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쉽게 얘기하면 인구는 점점 줄고 주택 수는 늘어나고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나중에 빈 주택이 늘어날 텐데, 나중에 인구가 줄었을 때 빈 주택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젊은 세대들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자기 집에서 살아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집에 계속 살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독립가구에 대한 회구, 갈망 때문에 일단 집을 산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집도 또 부족해.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저출산 문제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고 약간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금방 10년 후 다가올 미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득세 감면은 사실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소위원장 강병원** 조은희 위원님, 한 분 더 말씀하시고 또 더 논의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본 위원이 아까 2025년까지 왜 1년간 하느냐고 여쭙봤잖아요.

○**소위원장 강병원** 2년간이에요, 24, 25.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24, 25, 2년간.

여쭙았는데, 그러니까 먼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영끌해서 하는 신혼부부 그런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게 또 생애최초주택하고 낱썩, 시간을 맞추는 거고, 그리고 서울 시내의 평균 주택가는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5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파트가 아니고 또 다른 주택이 될 거고 거의 지방에 사는 신혼부부가 해당이 많이 될 텐데 그런 점에서 2025년에 이걸 다시 논의한다니까 미래를 위한 걱정은 또 2025년에 하고 지금은 정부안을 수용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두 분 위원님……

이성만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성만 위원님.

○**이성만 위원** 뭐 좀 물어보게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취득세가 얼마나 덜 걷히게 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625억 규모입니다.

○**이성만 위원**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예.

○**이성만 위원** 작년도, 올해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런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만 위원** 올해 거래량이 상당히 적은 편이

니까 거의 한 1000억 정도 되겠네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그런데 실제로 거래되는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600억 언저리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만 위원** 그러니까 올해만 한정한 게 아니라 시물레이션을 여러 해를 거쳐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간……

○**이성만 위원** 저는 이런 감면 해 주는 것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아까 차관님 얘기했듯이 국민적 정서가 있으니까 한 12억 이하 주택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정도 선이면, 이 정도 감면을 한 2년 동안 시행해 보고 그 효과성을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해식 위원** 지금 이 법안이 아까 시가로 한 5억 정도,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5억이면 전액 면제받습니다.

○**이해식 위원** 전액 면제의 경우에는 5억 정도 되는 주택인 경우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2억을 기준으로 하면……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12억이면 납부세액이 3600만 원이 나오고요. 500만 원 공제받아서 납부세액은 3100만 원이 나옵니다.

○**이해식 위원** 글썄, 그러니까 500만 원이 공제되는 거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우택 위원님.

○**정우택 위원** 다소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한 가구에 500만 원 감면 한도, 아까 서울 같은 데는 지금 합계출산율이 0.5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이서 0.5명밖에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지금 정말 국가 어젠다로 처해 있는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저는 불가피한 지원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거기에 보면 일시적 다주택은 허용을 하면서도 종전 주택 처분기간을 3월 내로 하라 이렇게 단서를 달아 댔는데 이게 과연, 이 특례 신설 후 3월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라든지 아니면 조

금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1년 내로 확대하는 방안도, 3개월은 너무 짧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6개월 내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물어 보고요.

그다음에 이 정부안을 보면 최소납부세 적용을 지금 배제를 했는데 이 최소납부세의 적용배제 기준이 뭐니까? 왜 배제를 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이것은 생애최초주택과 마찬가지로 공제하는 방식을 저희가 채택을 하다 보니 말씀드린 것은 적용이 안 됐던 상황입니다.

만약 최소납부세를 적용하게 되면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500만 원을 공제해 주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다른 법률에 있는 주택 관련 취득하고 전체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3개월도 생애최초주택에 3개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춘 사항입니다.

○**정우택 위원** 그래서 시급성이나 한시성 또는 공익성 측면에서 타당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일시적 다주택자나 또 계층구분이 없는 정부안에 대해서 혹시 일시적 다주택의 경우에도 담세력이 있고, 담세력이 높다고 그럴까요? 담세력이 높고 또 취약계층도 아니라고 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도를 좀 두자는 의견을 제시했었던 거고요.

○**정우택 위원** 하여튼 정부는 지금 최소납부세 적용을 배제하자, 여기 안대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정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부의장님, 최소납부세 관련해서요, 저희가 500만 원 공제방식으로 특례에 두는 지금 최초의 사례인데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유례없는 저출산 대책이기 때문에 500만 원까지 둔 것이고……

이 부분에 최소납부세제를 두게 되면 최소납부세제는 취득세의 경우 200만 원 이하는 전액 면제인데 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는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5억이면 전액 면제가 되기 때문에 15%를 내게 되면 75만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비싼 5억 5000 아파트를 사게 되면 500만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5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런 조세역진성 문제가 있어서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기가 적절치 않은, 제도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택 위원 그런 측면도 이해가 갑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이성만 위원 정액제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예, 공제입니다, 500만 원까지.

○이성만 위원 그러니까 정액제로, 정율제가 아니고.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런데 최근에 저출산 관련된 보고서나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걱정되는 수준, 한국은행 보고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은 저는 괜찮은 정책이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지방세수가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지방재정이 온전한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서울시 자치구만 해도 보니까 거의 한 오륙백 억씩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23조 정도 지방세수가 결손된 것 아니겠어요, 올해만 해도, 올해 기준으로. 그렇지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거의 한…… 얼마 정도 감액이 됐지요, 작년에 비해서?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교부세가 8.5조 정도 줄게 됩니다.

○이해식 위원 교부세가 8.5조고 다른……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지방세가 아마 조금 더……

○이해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의 한 15조 이상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 600억 이상 또 결손이 생기는 건데 이것 보전해 주거나 그런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는 이런 정책 충분히 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이게 재정 상황이 그런대로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감면만, 감면 정책만 이렇게 나오면 지방에서 살

람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600억 정도면 거의 서울시 자치구만 해도 자치구별로 한 4~5억씩은 결손이 생기는 건데, 어떤 뉘 특별히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조금 전에 이성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한도를 예를 들면 의결을 해 주시면, 12억이라든지 제한을 해 주시면 좀 더 세수가 줄어들 수가 있고요. 또 이 안을 저희들이 행안부 단독으로 만든 게 아니고 전 지자체 공무원들이 모여서 합동 작업을 하면서 방안을 강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들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500만 원이라는 범위를 설정한 것이고 또 국회에서 12억이라는 캡을 씌우시면 좀 더 세수 결손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은희 위원 캡을 씌우는 게 좋겠어요.

○문진석 위원 그런데 오히려 말이지요. 지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은 누구나 아이를 갖게 되면, 출산을 하게 되면 다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집을 못 사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저는 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5억이라도 6억이라도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임대주택에 살면서도 아이를 두 명, 세 명씩 출산을 해서 기르는 그런 세대는 혜택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차별적인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님,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출산율…… 우리 통계를 보면 어쨌든 신혼부부들의 가장 고민 중의 하나가 주거안정 문제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그래서……

○문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그건 하는데 세금을, 취득세를 다 걷어서 모든 출산하는 세대한테 동등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취득세를 줄이면 결국은 시민들이 다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꾸로 얘기하면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준 만큼.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어쨌든……

○문진석 위원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특정 집을 살 수 있는 세대에만 지원을 해 준다. 집을 살 수 없는 아이를 갖고 있는 세대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 뭐 당장 현금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저는 별로 바

람직한 정책이 아니라고 봐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위원님, 저출산·양육 대책은……

○문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 잘 알아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다양한 옵션들을 두고 자기의 여건에 맞는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하는 게 좋은……

○문진석 위원 아니,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게 맞지요. 그렇잖아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건데 이런 것은 특정 계층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강병원 예, 이 정도로 하시지요.

○이성만 위원 아니, 제가 좀 한 가지……

○소위원장 강병원 그만하시지요.

○이성만 위원 아니, 관련해서, 문진석 위원님 얘기하신 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소위원장 강병원 예, 마지막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 문진석 위원님 얘기는 사실 정확한 얘기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애를 낳는데 특별한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면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행안부 잘못이라기보다는 저출산대책위나 이런 데서 전체적인 저출산 대책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좀 형평성 있는 설계가 안 됐다.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그러니까 애를 낳는 가정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래야 혜택을 직접적으로든 어떻게 하든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문진석 위원님과 아주 생각을 같이 하고요.

다만 행안부가 저출산 대책 주무부서가 아니고 행안부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행안부에 대한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향후에 저출산대책위에서 논의 과정에서 그런 거를 좀 개진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예,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상임위에 계류시켜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장려를 위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저출산 현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 간 육아휴직 사용률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 육아휴직 제도 활용을 유도하고 저출산 문제 완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입니다. 다만 기업의 고유업무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육아휴직 장려의 정책 목적 관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 시에만 납부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만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 육아휴직 사용률이 다시 낮아지는 경우 기감면된 취득세액을 추징하는 등 사후관리가 어려워 취득세 감면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중하게 검토,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45페이지, 공익 목적 법인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공익 목적 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박성민 의원님 안은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정우택 부의장님 안은 아동·청소년·노인·여성, 인권, 환경보호, 국제구호 활동 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경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교·자선·복지·인권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서 공익 법인의 활동을 촉진하고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2년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수가 총 1만 5577개로 이 중 개정안이 열거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는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감면 대상 단체의 공익 목적사업의 범위와 종류가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우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정우택 위원 지금 공익 목적 법인 그거 하고 있지요, 감면?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정우택 위원 우선 기부자가 부동산 기부 의향이 있음에도 지금 자선단체가 취득세의 12%를 납부할 재원이 없어 가지고 부동산 기부를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지금 정부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에 4개의 목적과 이를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상세 기준은 하위법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각 단체의 부동산 기부에 대한 이런 세부지침 또 관리 감독 이거는 소관 부처에서 하위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정부 의견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부의장님,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자선단체 감면을 하겠다 하면 그 감면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 특별법에 자선단체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제시하면서 ‘자선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감면을 하겠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이러면 지나치게 좀 포괄적인 측면이 있고, 저희들이 감면을 할 때는 명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명확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우택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기부 문제가 좀 있으니까 부동산 기부에 대해서만큼은 각 소관 부처의 관련된 단체들과 연계되는 법령에 이것을 좀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일괄적으로 그냥 4개의 목적과 이를 수행하는 단체에다가 상세 기준을 그냥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을 기부할 수 있는 걸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통합 심사하면서 그런 주무부처도 좀 찾고 해서 의견을 듣고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강병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계류하여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50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대부금 취득 부동산입니다.

5건의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상 3년의 일몰기한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이거는 3년 연장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신 걸로 하고 3년 연장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53페이지, (국가유공자 단체) 고유업무 부동산, 사업소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4건의 법률안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3개 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3개의 국가유공자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몰기한 연장은 3년이 통상입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감면 대상 단체 확대입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훈부의 설립·승인을 받은 3개의 유공자단체가 추가됨에 따라 해당 단체를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특별한 의견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56페이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부동산입니다.

4건의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예, 그 정도 하시지요.

이것도 일몰기한 연장하는 거고,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58페이지, (국가유공자)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 대상자 및 감면 대상, 감면 기준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영제 의원안은 감면 대상에 친환경자동차를 추가하는 것이고, 허종식 의원안은 감면 대상 승용자동차의 기준을 2000cc에서 2500cc로 완화하면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은 감면 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를 추가하고 해당 대상자에게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면 대상에 친환경자동차를 추가하는 부분은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감면 가능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혼선 가능성을 줄일 필요성 그리고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별도 규정으로 감면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배기량 기준 완화 및 일몰기한 연장입니다.

과거보다 차종 및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조장비가 더욱 다양화된 점, 배기량 기준이 저가 승용차와 고가 승용차를 나누는 절대 기준이 아닌 점 등 고려 시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 확대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장애인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과의 형평성 그리고 아직 일몰이 미도래한 점도 고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감면 대상 확대인데요.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신체적 장애 측면에서 동일한 대상으로 이동권 제약 및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 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입니다.

다만 감면을 조정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지원 대상자와의 차이를 감안하여 감면율을 50%로 차등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법안심사를 하면서 일몰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심사를 했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정부 측에서 그 감면 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좀 더 넓혔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65페이지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 경감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에 의한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취득세 감면이 지방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매우 신중한 도입 결정이 제언되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신중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중하게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68페이지입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25년까지인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23년 3월 14일 날기개정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이것은 아직 일몰기한 도래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현행대로 가겠습니다.

다음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71페이지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적용 특례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22년도 재산세 부과 방식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산정 시 21년 시가표준액 등을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해식 의원님 안은 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경과입니다.

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서 세 부담을 완화하였고 22년도 재산세는 이미 납부가 이루어져서 실익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는 정부 측 신중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신중 의견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대로 계속 보류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75페이지,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개정안은 종교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 이외에 민법상의 비영리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을 확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교단체인 재단법인과 종교단체가 아닌 재단법인 사이의 과세 형평성과 비영리민간의료기관이 지니는 공적 의료 기능 등을 감안할 때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민법상 사단법인, 다른 민간 의료기관과

의 형평성, 일몰기한 미도래 등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수석전문위원 말씀처럼 비영리사단법인, 의료법인 그리고 아직 일몰이 도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우택 위원님.

○정우택 위원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 감독 규제를 보면요 의료재단법인의 경우에 의료법상 의료법인 못지않게 관리 감독 체계를 그대로 받고 있어요. 또 국민들한테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차이가, 똑같아요. 차이가 없는데 다만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금 조세 감면 부분에서 취급을 달리한다는 것은 저는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리 감독도 의료법상의 규제 똑같이 받고 있고 또 대국민 서비스도 다 같이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실질적 기능을 하고 있는데 한번,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만 갖고 조세 감면 부분에서 취급을 달리한다? 이것은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정부가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된다.

지금 현행, 물론 기한이 도래한 것, 이것도 내년이면 도래되는 거지만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우선 조금이라도 감면을 해 주고 그러고서는 내년에 이게 일몰이 도래하니까 다양한 의료기관, 다시 말씀드리면 비영리의료재단법인이라든지 사단법인 이런 다양한 의료기관의 의견을 청취해서 합리적 수준으로 내년에 일몰도 도래하니까 이렇게 조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조금이라도 정부가 조정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 의견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저희들이 현재 신중 검토인 이유는 지금 물론 재단법인 중에 종교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과 종교단체가 아닌, 지금 감면을 확대하자고 하는 종교단체가 아닌 재단법인이 설립한 법인 간의 형평성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교단체의 재단법인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취득세나 재산세는 다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와 연관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단법인이 설립한 병원이 한 30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 사단법인은 현재 감면이 전혀 없는 상태고요. 이 사단법인 설립 병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 일몰이 도래하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 주신, 사단법인 병원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과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정우택 위원 그 취지는 저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현행이 하여튼 재단법인 중이고, 지금 사단법인을 왜 여기다 또 끌어들이니까? 지금 현행이 재단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단법인 중에서 종교단체가 만든 재단법인만 하니까 조세형평의 문제로 민법상의 재단법인도 하는 게 좋겠다, 그것을 제기하는 거라서 제가 지금 도래하지 않은 이것을 전에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이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 하는 인식은 정부가 분명히 가져야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부 쪽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감면해 주겠다 하는 의사를 가져 뒀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정부가 수정의견을 제시하셨습니까, 그대로 밀어붙이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웃음소리)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부의장님, 어쨌든 담세력을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말씀처럼 사실 내년에 일몰이 도래하기 때문에 여기에 1년 기한으로 일단 감면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요.

그런데 담세력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종교단체나 의료법인 수준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 한 반이라도 해서 내년 1년 기한으로만 해서 내년에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정우택 위원 지금 여기 취득세 30%, 재산세 50%를 반 정도 감면하는 선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담세력이 있다고 보고요.

○정우택 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정우택 위원 그 말씀에 저는, 정부 의견에 저

는 찬성을 합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제가 뭐 하나 질문 좀 할게요.

현재 민법상 설립된 재단법인 중 종교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몇 개입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지금 현재 29개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29개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예.

○소위원장 강병원 그러니까 비영리재단법인 개설 의료기관 수는 179개고……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사단법인은 300개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315개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그러면 어쨌든 이 29개에 대해서는 그 혜택들이 가지만 나머지 179개, 삼백열몇 개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는 것은 맞고, 정우택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구구절절이 맞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거는 조금 빈약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정부 측에서도 뭔가 실질적으로 나머지 재단법인이든 이런 부분이 개설한 의료기관에도 혜택을 주는 것을 고민하시겠다고 하는 거고요.

수석전문위원 한 말씀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제가 여기 자료에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례제한법을 보면서, 우리가 형평성을 논할 때 비교 대상을 어디다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바로 옆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잡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설립된 재단법인 중 종교단체와 민법상 설립된 재단법인 비교가 1차로 우선이고 이 내에서 비교가 끝난 후에 사단법인과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수정의견을 내신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오늘 어차피 이것 우리가 심사하기로 했으니까, 혹시 이 179개 민법상 설립된 재단법인의 세제상 혜택을 여기…… 감면 내용을 똑같이 하게 되면 세수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34억 정도 되고요, 아까 제안드린 반 정도 하면 17억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이것 참…… 가끔 화가 나요. 아까 여러분 출산·양육 위해서 하고자 했던 그 세수감이 육백몇억이었어요. 육백몇억이었고 어제 논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조정대상지역 1가구 2주택 그것 다 소급해서 감면해 주자고 한 게 3394억입니다. 그런 것들은 국회하고 논의도 안 하고 마음껏 질러 놓고…… 난 이것 수천억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종교단체가 설립한 것하고 그냥 민법상 설립된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다 의료기관으로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공공의료 서비스 하고 있는 건데. 나는 무슨 세수감이 몇 천억씩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봐서는 정우택 위원님이 정말 좋은 법안 내셨네요.

이성만 위원님.

○이성만 위원 종교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 자체가 종교단체 목적으로 쓰인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면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지금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성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의료기관이 아니고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종교 목적으로 쓴다는 가정하에서, 그런 경우에도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감면을 안 해 주지만……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종교단체는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만 위원 종교단체가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시켜 줘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해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만 위원 취득세를 면제시켜 줘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예.

○이성만 위원 그러면 종교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종교 목적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만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해야지요. 논리적으로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으로 쓰는 경우

에는 부동산 취득을 할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시켜 주니 종교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도 종교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시켜 준다는 논리를 세운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으로 쓰는 것은 면제를 해 주는데 종교단체라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과세고요, 그래서 의료업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세를 하는 건데 의료업이라는 국민 전체적 공익성을 고려해서 일부 감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만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하는 의료사업이 선교라는 전체적인 목적하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다라고 보여지면 그러면 종교단체가 설립한 의료단체는 당연히 이것은 면제를 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종교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이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종교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때는 이 취득세를 면제시켜 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당초에 종교단체인 것이냐 비영리단체인 것이냐, 비영리단체도 공익성이 있으니깐. 그런 둘 간의 구조 속에서 현재와 같은 법령이 나왔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다른 논리가 붙어 버리면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종교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종교 목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고 그러면 현재 체제가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때는 전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예.

○이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우택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내 주셨고 정부에서도 민법상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해서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그 감면 내용을 올해에는 취득세 15%, 재산세 25%, 이 부분을 어쨌든 정부안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제시한 겁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그 부분 제시한 것이고 아직 일몰기한이 도래하지는 않았습시다만 내년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종교단체가 아닌

재단법인 그리고 사단법인이 설립한 305개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 간의 불공평함이 해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정우택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우택 의원님 굉장히 좋은 법안 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께서 명석하게 결말을 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아이고, 아닙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78페이지,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진석 의원님 안은 의료사업과 의료 외 사업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하면서 일몰기한을 27년까지 연장하는 것이고요, 정부안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의료 외 사업에 대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료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면율 상향입니다.

의료사업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이 24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감면율 상향에 있어서는 국립대학병원 등 유사 감면 대상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료 외 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면율 상향입니다.

일몰 연장은 통상 3년이고 감면율 상향은 23년 3월 14일에 25%에서 50%로 기상향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일몰기한 연장하고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5-1권이 끝났고요, 다음은 5-2권이 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좀 안 쉬어요?

○소위원장 강병원 예?

○조은희 위원 안 쉬고 그냥 해요?

○소위원장 강병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해식 위원 쉬시지요. 머리가 아프네요.

○이성만 위원 그래도 쉬고 해요.

○소위원장 강병원 또 어디 가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쉬면?

○이해식 위원 아니아니, 안 가요.

○소위원장 강병원 쉬면 가시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조은희 위원 우리 이제 두 권 남았잖아요.

○소위원장 강병원 그러시면 잠시 실내 환기 등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했다가 4시 정각에 속개할 테니 그때 꼭 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소위 자료 5-2권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소위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등에 대한 감면 중에 학교 등에 대한 감면에 전공대학을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23년 3월 14일 전공대학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을 추가로 면제하고 최소납부세제 배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입법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문진석 위원님.

○문진석 위원 차관님, 이게 입법 취지가 이미 달성된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문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그러면 현행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6페이지입니다.

지방대학의 수익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지방대학법인의 수익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가액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대학의 재정자립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는 규제혁신추진단이 22년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굴하여 마련한 개선방안의 일환입니다.

토지 매각대금 이상의 건축물 등 취득 허용 필요입니다.

개정안은 지방대학법인이 토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의 범위에서 취득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방대학의 자율적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매각대금 이상의 건축물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매각대금 범위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지방대학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안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0페이지,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특례입니다.

개정안은 의과대학 부속병원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저율의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해당 신설 특례와 다른 규정의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22년부터 학교법인 소유 교육용 토지에 한정하여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의과대학·간호학과 학생들의 교육훈련, 연구 등에 사용되는 부속

병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타 비영리사업자,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비영리사업자가 합산과세로 전환된 점, 국립대학 병원, 의료법인·종교단체,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과 달리 의과대학 부속병원에만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 법 개정 검토인데요. 의과대학 부속병원 부속토지를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설정하려는 취지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보다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신중 검토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 보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3페이지,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산학협력단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몰기한 연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6페이지,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사용’에서 ‘직접 사용’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특례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8페이지,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내용입니다.

5건의 개정안은 기초과학연구원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확대하고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며, 22년 감면 규모는 9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을 말씀드리면 감면 대상에 국방과학연구소,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추가하되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50%p 하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입니다.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의 감면이 종료되는 시점인 23년에 종합적으로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면 대상 확대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등은 경제·인문사회, 국방, 해양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업무 수행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공익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면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공공기관들은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국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점 그리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조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몰기한은 3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는 이렇게 감면이 100%에서 50%로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 연구기관들과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반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감면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또 다른 추가되는 공공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가는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예, 알겠습니다.

정부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23페이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5건의 개정안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배 의원안이 조금 다른데요. 이것 플러스 녹색건축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경과인데요. 20년 법안소위에서 개정안과 같이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우선 정부안대로 일몰기한만 연장하기로 하였고요. 21·22년 법안소위에서는 일몰 도래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취득세 감면율 상향 및 재산세 감면 규정 신설 관련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해서는 20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취득세 15% 감면을 15~20% 감면으로 상향한 점 그리고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2018년에 일몰기한이 종료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 측에서는 정부안을 희망합니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율을 21년도에 상향한 점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의 현행 안을 유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30페이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면제입니다.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지원과 지방세 특례 최소화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설치비용의 50%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제지원 효과성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일부 문구에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면 대상이 변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지금 충전시설 설치비용의 50% 이상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의무 설치해야 되는 대상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수정의견을 수석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위원님들한테 별지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검토의견에서 수석전문위원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대기환경보전법 및 다른 법에서 설치비용의 50%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 이 부분을 지원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주신 의견처럼 설치 의무가 없는 자에게 유인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성만 위원 설치 의무가 없는 자라는 게 누

구를 얘기하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지금 설치 의무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500세대에서 100세대로 조정이 됐고요.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대수가 100세대가 안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현재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수정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35페이지,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사찰립 및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경과입니다. 다른 종교단체 및 비영리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정부 측의 신중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익사업 등에 이용되더라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사찰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전통사찰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하지만 다른 감면 규정들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한하여 감면하고 있으므로 기타 단체, 문화재 등에 비해서 사찰립과 전통사찰보존지를 특별히 우대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양물 생산 등을 위한 경우 재산세 면제 관련해서는 역시 다른 종교단체 및 향교에 대한 감면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사찰의 운영 및 공양물 생산과 관련된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설정하려는 취지라면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금 문체위에 회부되어 계류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짚어 주신 사항에 동의합니다.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현행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39페이지, 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체육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중의 문화향유, 체육진흥활동에 기여하며 문화예술 및 체육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특례의 신설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른 부처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세수감이 꽤 많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18억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18억 정도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예.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41페이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지난 소위 때 이미 관련 단체에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점, 사회복지 등 다른 분야의 유사한 기관·단체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측의 신중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역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별도 지원을 고려할 때 조례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미 재정적 후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지적처럼 국가와 지방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중 검토하자는 말씀을 올립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안은 계속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44페이지,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 생태계 및 문화유산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신탁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국민신탁법인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신탁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 내용입니다. 신탁법인과 신탁단체의 차이 및 현행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이 24년에 도래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정부 측의 신중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2년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환경부로부터 국민신탁단체로 최초 지정받아서 신탁법인과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지방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민신탁법인은 국민신탁단체에 비해서 사업절차, 자산관리나 회계처리 등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국민신탁단체와 국민신탁법인의 성격에 차이가 있고 또 24년도에 일몰이 도래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현행대로 유지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48페이지, 문화재수리 취득세 면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화재수리가 건축법상 대수선·개축·재축·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공재로서의 문화재의 원형 보존·보호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면제 여부입니다.

개정안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 표현은 취득세의 비과세 취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이 취득세가 부과됨을 전제로 이를 면제하려는 취지라면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표현 대신에 ‘면제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일몰기한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소납부세제 적용 여부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이 취득세 전부를 면제하려는 취지라면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이게 개인 소유 재산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충분한 세제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계속 계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국민신탁단체 관련해서 차관님께 좀 당부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찬스를 놓쳤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예, 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조은희 위원 차관님, 신중 검토하는 행안부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신탁단체는 신탁법인과 설립 취지나 운영 방식 그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국민신탁법의 개정으로 신탁단체 역시 법인에 준용하여 동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탁법인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종료기한

이 24년으로 1년 더 남아 있는 만큼 이때 일몰규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신탁단체에 대한 감면 여부 역시 함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의 차이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된다라면 함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이 일몰이니까 그것을 한번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희 위원님.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은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분할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분할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을 주로 하는 사업 부분의 분할은 적격분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체계에 비추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58페이지,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전 매각금액 범위를 한도로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정상화 이후 재매입 시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요인으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

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부칙은 특례를 두고 있고 이것은 종전 매각금액 범위 내로 한도를 축소하는 개정안의 침익적 효과를 고려할 때 타당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부실징후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감면 연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63페이지,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안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66페이지입니다.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되겠습니다.

4건의 개정안은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대도시 종과세 배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중 집적지역 신·증축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수준을 조정하고 일부 조항을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6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 사업시행자 감면을 조정합니다.

벤처기업의 확산 및 촉진을 위해서 97년부터 장기간 감면을 해 온 점 그리고 최근 벤처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수가 일정한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등 유사 시설에 대한 감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취득세 감면을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

입니다.

다음,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내용 변경입니다.

개정안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의 종과배제 특례를 일반적인 세액감면,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집적시설 및 벤처기업이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목인 점을 감안했을 때 감면의 종료가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조문 이관인데요.

이 부분은 관련 조문의 체계상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의 종과배제 특례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신·증축자에 대한 비수도권 재산세 감면을 상향입니다.

지역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활성화를 더욱 도모하자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69페이지, 부칙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에 따른 60%의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적용례를 두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에서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조문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유사한 조문으로 법체계를 이관한 것이고요. 이관 후에 해당 규정 일몰 도래가 25년도입니다. 그때 함께 검토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거기의 일몰이 25년이어서 그렇게 25년으로 하셨다 이런 말씀이네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께서 정부안 중심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석전문위원 의견 들으셨겠습니다만 특별한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76페이지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6건의 개정안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부안을 말씀드리면 감면에서 제외되는 유형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경과입니다.

이인선 의원안과 관련해서 유사 감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측의 신중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몰 도래 시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고요.

검토의견입니다.

감면 가능기간 연장 및 재산세 감면을 적용기간 확대입니다.

장기간의 지원을 통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법인,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 유사 특례에 비해 감면을 장기간 허용하고 있어 해당 감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감면 제외 유형의 구체화인데요.

정부안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 중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창업 양태의 다양화에 따라서 과세 및 감면 시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시행령으로 위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이 없으시면 현행대로 일몰기한 연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85페이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되겠습니다.

3건의 개정안은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을 보시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고 있고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를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학교 이외에 있어서는 취득세 70%, 재산세 50%를 취득세 50%, 재산세 50%로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의 신규 취득이 많지 않은 점과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학교는 현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학교 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특수성 그리고 현행 학교 이외의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지방세 감면 정도의 차이가 현행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87페이지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감면을 종료하는 것은 대부분 임대 방식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 봐도 될까요?

이렇게 학교 이외에 있는 사업자하고 학교 안에 있는 사업자가 있잖아요. 구별을 해 놓으셨는데 오히려 학교 바깥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학교는 뭔가 지원시설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 같은 것도?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실제 운영에 있어서 학교 외에 임대를 하시는 경우에 임대료라든지 관리 비용이 학교에 비해 한 서너 배, 많게는 다섯 배 이상 더 많이 비용을 그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약간 차등을 두게 된 것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그분들이 임대료를 오히려 받는다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임차 비용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현행대로 일몰기한 연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93페이지입니다.

친환경선박에 대한……

○소위원장 강병원 잠시만요.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정부안대로.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선박에 대한 감면이 되겠는데요.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 증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인 증등급에 따른 취득세율 경감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례 신설의 필요성입니다.

국제환경규제 강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에 친환경선박 도입을 유인할 필요성 그리고 국내 항만 내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공익성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입 니다.

세율 경감입니다.

선박의 취득방법·규모에 따라서 표준세율에 차이가 있어서 특례 방식을 세액공제·감면이 아 나라 세율 경감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친환경선박에 대해 보조금이 지원 중인 게 있습니다. 보조금 등의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 중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친환경선박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적처럼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시 세율을 보조해 주는 게 적정한가에 대해서 현재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있습니다만 취득세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선박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한 190억 원, 한 척당 보조금은 한 50억 정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150억 정도가 아마 지출이 되어야 해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제지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그러면 수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조금 예산 지원과 지방세특례 중복 최소화 원칙을 감안한다 그랬는데요. 거기에 대한 무슨 별도의 대안이 있는 건가요, 수정의견이 나?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지방세특례제한법 2조의 2를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덟 가지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금을 준다

든지 예산상 지원이 되면 세제 특례하고 이것을 비율을 정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측면인데요.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율 감을 해서 어떤 유인하는 부분도 있고 보조금을 줘서 아예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요. 그 양자의 어떤 부분이 참인지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예.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인데요. 2건의 개정안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의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무 설치 대상 선박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어업인들의 조업활동 지원 및 해양사고 예방 등의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목으로 감면의 취지가 일정 부분 달성된 경우가급적 특례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발적 설치의 선박에 대한 감면의 신설인데요. 21년 이전에 건조돼서 법률상의 설치의무는 없으나 단말기를 자발적으로 설치한 기존 선박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를 면제 지원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 및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조금이 지원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다수의 선박에서 관련 내용들이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면 금액이, 감면 액수가 21년도에 4만 6000원이 총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연장을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만 위원 그런데 당초에 왜 이것을 검토하게 됐습니까, 이 부분적인 것을? 선박 자체도 아니고 선박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4만 6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당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상교통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성만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고.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유인책으로 아마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성만 위원** 이게 유인책이 될지, 4만 6000원을 몇 사람이 나눠서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법을 너무 누더기로 만드는 꼴이 아닌가 싶어서요. 실익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문진석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문진석 위원**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된 게 2020년 1월 29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이전에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선박들이 이후에 설치를 했어요. 그것도 이렇게 소급, 추가적으로 뭔가 자발적으로 설치한 선박에 대해서는 감면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해수부 입장도 보니까 해양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대부분 이후에 설치하는 선박 이랑 어선들이 소형 어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금액상으로 감면 혜택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4만 얼마고 지금 현재는 2만 원 약간 넘는 것 같은데 그 금액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발적 설치를 또 이렇게 홍보하고 하는 데는 그래도 필요한 조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이것 같은 경우가 아마 보조금의 중복 지급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보조금이 최대 250만 원 정도, 굉장히 많이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일에만 원에 비해서 상당히 큰 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충분히 보조금이 워낙 크네요. 그렇지요? 그중의 일에만 원이니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몰을 올해 말로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안 현행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부분이 되겠습니다.

3건의 개정안은 국내 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항공사에 대한 감면을 유지 또는 종료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요, 현행은 감면 내용이 취득세 1.2% 경감 그리고 재산세 50% 5년간 감면을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서에, 65조 단서 밑의 칸입니다. 자산 5조 원 이상 사업자는 재산세 50% 감면이 일몰기한이 23년이고요. 위의 본문에 있어서는 24년에 일몰기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교홍 의원님 안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안이 되겠고요. 김용환 의원님 안은 자산 5조 원 이상 사업자의 재산세도 포함시키는 단서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안의 경우에는 자산 5조 원 이상 사업자의 재산세 감면을 제외하는 이런 차별성이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항공사의 재산세 감면 연장 부분인데요. 현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형 항공사는 2개입니다. 19년 대형 항공사를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당시에 특정 항공사에 대한 징벌적 조치라는 의견이 존재하였던 점, 그리고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급감하였던 영업이익 그리고 여객 운송실적이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항공운송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대형 항공사 항공기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통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는 자산 규모 및 담세력 등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19년 법안 심사 당시 대형 항공사를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대형 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축소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후 21년 법안심사 과정에서 대형 항공사의 경우 다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2년의 한시 감면을 도입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정부안의 경우에 감면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법에서 규정하기가, 기준을 자산 규모로 잡는 게 쉽지는 않겠으나 법체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포괄위임의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감면 여부의 기준을 자산총액으로, 조세의 형평성 기준이 자산총액으로 나뉠 때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몰기한 연장 관련해서는 아직 미도래한 점을 고려해서, 취득세 감면 규정이 미도래한 점이 있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통상 3년 이렇게 규정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봉민 위원 이게 지금 정부안에서는 현재 5조 이상에 대해서는 감면을 제외하겠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종료하자는 의견입니다.

○전봉민 위원 그런데 이게 자산만 보고 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자산 5조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봉민 위원 예를 들어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자산도 있고 부채가 있는데 부채도 거의 자산 규모만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자산이 117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나는. 부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있습니다.

○전봉민 위원 부채도 그 정도 있다라고 봤을 때에 실제 항공업계 아까 얘기한 대로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감면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님 판단이 되는데.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검토한 이유는 코로나 상황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감면 혜택이 있었습지만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경영이 정상화되었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봉민 위원 정상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여러 가지 순이익이라든지 승객 수 같은 내용들을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니다.

○전봉민 위원 그것을 언제, 코로나 전하고 비교를 했던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코로나 전 19년도만큼

은 아니지만 90% 가까이 회복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봉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어느 정도 정상화됐을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제외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항공업계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원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본 위원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정우택 위원님.

○조은희 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대형 항공사 항공기 재산세 감면은 저는 올해로 일몰 종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7년 이후의 장기 지원을 통해서 이미 국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또 한시적 지원 사유였던 코로나19 종료 이후로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형 항공사 수익이 항공 여객의 증가로 거의 99.6% 정도 제가 찾아본 통계로는 회복됐다고 봅니다.

일몰이 내년에 도래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항공기는 그렇고요, 대형 항공기는 올해 만료됩니다.

○조은희 위원 올해 만료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조은희 위원 그래서 올해 만료가 되면, 제가 말해 놓고 지금 헛갈렸었네요. 올해 만료가 되면 올해로 일몰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항공이, 예를 들면 KAL이나 아시아나는 5조 이상, 비록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부채는 회사가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 부채를 한 거고 5조 미만인 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티웨이 등이 있는데 이렇게 동시에 감면해 주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몰 종료를 강력하게 의견 개진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우택 위원님.

○정우택 위원 의견이 갈리는데 저는 조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동종 업종 간의 이 자산 규모를 근거로 해서 특정 업체만 세제 감면에서 배제하는 것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여러분 해운산업 같은 것도 보면 자산 규모가 많다 그래서 저 업체는 면제에서 제외한다 이런 규정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으로

볼 때도 그런 것 안 합니다. 나는 특정 업체 이것만 배제하겠다, 그것도 자산 규모가 담세력 기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는 사례를 저는 본 적이 없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 말이지요, 지금 부채 비율이 제가 갖고 있는 통계로 보면 2097%예요. 아까 자산 규모가 113조 얼마라고 그랬는데 13조지요, 13조 7000억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 정도 됩니다.

○**정우택 위원** 자산 규모가 13조 7000억, 부채가 13조 700억입니다. 부채비율이 2097%, 과연 이런 아시아나가 담세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는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조금 아까 제가 글로벌 스탠더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EU 이런 데 보면 주요 경쟁국, 이런 주요 나라를 보면 이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다 부과하지 않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아까 해운 쪽 얘기를 했지만 지금 해상운송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10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한 15% 세율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유사 산업 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요.

또 우리나라 국적사가, 우리나라 대한항공 어찌고저찌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한항공의 운송 순위 보면 세계 44위예요. 우리 경제권은 10위 안에 들어가지만 대한항공 44위, 아시아나 60위 이런 성적표를 갖고 국제 시장에서 과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제 주장은 이 자산 5조 조항 이것 구태여 정부안에서 잡아낼 이유가 됩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가 처음의 이야기가 다시 반복이 되지만 동종 업종 간의 자산 규모를 근거로 해서 너희는 면제 대상에서 뺀다는 이런 것을 다른 유사 업종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 왜 항공 이쪽에만 이것을 적용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그 단서조항 이것을 삭제해 요청합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다른 위원님들?

문진석 위원님.

○**문진석 위원** 차관님,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산 규모 5조 이상에 대해서 감면 조치를 유예한다라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는 어쨌든 5조 이상 사업자를 재산세를 배제하는 안으로 일단 저희가 제출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 입장이 무슨, 기존의 법대로 지금 내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지 않는 거지.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지방세특례 감면은 원칙적으로 납세의 의무가 있는 납세자에게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특별한 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특례의 여러 가지 기준,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와의 관련성 등 일고여덟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라는 특히 담세력, 조세납부 능력 이 부분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제도를 설계할 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기업 군에 속하는 자산총액 5조 이상인 경우에는 담세력이 있다고 봐서, 올해 작년에 당해에 순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담세력이 있다고 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설계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진석 위원**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담세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정우택 위원** 그렇게 따지면 아시아나가 담세력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나는 담세력 없다고 봐요. 지금 제외하는 게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두 군데인데 아시아나만 봐도 제가 보기에 담세력 없어요. 이것 제가 생각하는 통계 자료를 보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어떻게 이것을, 그냥 자산 5조 이상이니까…… 13조 아니라 100조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소위원장 강병원** 아까 차관께서는 정부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정부안을 냈습니다만 여기에 꼭 연연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잘 의견을 모아 주시면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현 하셨거든요.

이성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만 위원** 경쟁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

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내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소형항공사 같으면 소형항공사 내부의 경쟁을 하지요. 일부 대형과도 경쟁을 하고요.

다만 2개라고 그러니까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인데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의 주 경쟁 상대는 티웨이라든지 제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소형항공사도 있지만 사실은 싱가포르항공이라든지 펜암(Pan Am)이라든지 또 유럽계에 있는 항공사들과의 경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도 다 국적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공사가 있는 나라와, 국적기가 있는 나라와 국적기가 없는 나라는 아주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목표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적기가 생존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선박·자동차 이런 물건들에 등기제도가 있어서 이런 물건들을 준물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치 부동산에서 매기는 취득세와 같은 세금을 똑같이 매겨 왔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관례가.

일본도 우리랑 비슷해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감면을 엄청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계나 유럽계에서는 아예 예를 들어 준물건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세제를 매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적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티웨이나 이런 데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델타항공이 됐다든지 싱가포르항공이 됐다든지 지금은 쿠웨이트항공 이런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법률체계에 의한 그런 세금체계를 계속 물리게 되면 경쟁체제에서 국가 목적에, 경제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니, 법을 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일반성과 추상성입니다. 구체화되고 개별화되면 안 돼요. 보면 이것은 둘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감정이 있다 이렇게밖에 더 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따지면 담세력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감면 이것은 왜 합니까? 담세력이 없어서 그 사람들 세금 깎아 준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국적기에 관한 문제는 진짜, 우리나라 국적 해운사가 없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나마 HMM이 다시 부활하는 바람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됐는데,

수출도 하게 됐는데 국적기의 경쟁력 제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더 해 줄 문제까지는 내가 뭐라고 얘기 못 하겠지만 다른 나라의 조세체계하고는 맞춰 줘야 되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강병원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차관님, 지금 대형항공사들 고유가·고환율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도 얘기하고 있고 또 국제항공사 간의 경쟁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여쭙볼게요.

올해 감면특례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타 산업군도 이렇게 연장해 줍니까? 예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든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연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산업 중에 항공산업과 유사한 산업을 연장해 준 적이 있어요, 5조 이렇게 해서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지금 저희 특별법에서 대기업군으로 감면을 설계하고 있는 것은 항공기가 유일합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2021년 논의 당시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2년간 한시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뭘 하나 해 주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계속 연장하는 것,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에 관한 취득세 감면 이런 것도 아주 엄격한 규정으로 해서 5억 원도 지금 보류한 사태입니다. 그런데 5조 이상의 대형항공사한테 이렇게 계속 감면 특혜를 준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조금, 101페이지의 검토의견 중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항공사 재산세 감면연장에 보면 ‘2019년 대형항공사를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당시’, 그 전에는 감면 대상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2019년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은희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조금 오해하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감면 대상이었는데 2019년에 왜 제외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뭔가 땅콩회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어쨌든, 정우택 위원님께서 아까 의료법인 문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종교단체인 재단법인과 종교단체가 아닌 재단법인간에 왜 차별을 두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공감을 해서 이것 똑같은 형평성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다들 공감을 해서 정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러면 자산 규모를 가지고서 이렇게 나누는 게 맞느냐. 그리고 2019년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갑자기 등장했던 겁니다, 이 조항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오히려 이 기회에 정부 측에서 위원들의 논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으니 단서조항은 없애는 것이 뭔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은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강병원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2019년 전에는……

○조은희 위원 정우택 부의장님 법안하고 이것하고 틀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그래요? 계속 말씀하십시오.

○조은희 위원 그것을 여기에다 적용하시면 굉장히 기준이 다른 걸 적용하시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강병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9년에만 제외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 전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조은희 위원님. 갑작스럽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문진석 위원 그러니까 2019년에 땅콩회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감정, 그동안 조세 감면 혜택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뭔가 우대를 했었는데 국민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약간 그때 보복, 징벌적 조치로서 자산 5조 이상의 항공사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조항들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것은 사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요. 자산 규모를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감면 대상이 아니고 일정 규모 이하면 감면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세의 과세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은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12억 이하·이상

이런 기준을 할 필요가 없지요. 전 국민한테, 그러면 재산세 어떤 국민한테도 다 해야 되는 거고요.

○문진석 위원 아니, 그것은 왜냐하면 과세 감면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된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조은희 위원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거지요.

○문진석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조은희 위원 대형항공사에 집중되는 것 아닙니까?

○문진석 위원 항공업계 전반적으로 자산 규모를 예를 들어 5조 이상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요.

○조은희 위원 이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잣대입니다.

○문진석 위원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담세력만 가지고 과세를 했다는 건데 조 위원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그 논리가 설득력이 있나 이런 측면이 있는 거지요.

○조은희 위원 저는 이것 보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정부가 담세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니까? 덩치만 크면 담세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봉민 위원 제가……

○소위원장 강병원 전봉민 위원님.

○전봉민 위원 우리 해운산업도 지금 현재 감면해 주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예.

○전봉민 위원 해운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던 대로 처음부터 계속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대중교통으로 활용되고 있는 연안여객선 같은 경우는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선박 저희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봉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우리 산업은 해운도 있고 항공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해운산업도 여기에서 보면,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해운사는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그건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만 위원 HMM 같은 데가 당연히 5조가

넘지요.

○전봉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해운이나 항공에 있어서 아까 얘기 하던 대로 전 세계적으로 해서 글로벌 대한민국 가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가가 어차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조은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특정 항공사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방공항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솔직히 대한항공도 있지만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 충분히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소위원장 강병원 알겠습니다.

정우택 위원님.

○정우택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몰기한이 되면 사실은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특례법이라는 게 대충 연장이 되고 하는 그게 주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일몰기한이 되면 그것이 끝나야 되는 것이 사실 정상이지요. 그래서 조은희 위원께서는 그것을 강조해서 지적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전봉민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해운산업에만 들어도 2016년 이후에 자산 규모 얼마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지방세 100% 감면 계속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항공산업만 딱 5조라는 것을 박아 갖고 두 항공사는, 제가 무슨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랑 특별 관계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 업체를 법에서 딱 박아 갖고 니네는 배제한다 이런 것은 법에서 규정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고 다른 산업하고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왜 항공산업만 갖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해운산업도 예컨대 자산이 3조 5조니 10조니 이렇게 되는 데는 제외한다는 선례 규정이 있었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그런 것 지금 전혀 없거든요. 타 업종은 없는데 항공산업만 꼭 자산 규모로 해서 니네 담세력이 있다, 없다 이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법 형평성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아까 정부 측은 위원님들 눈

의에 맡기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성만 위원 (손을 들)

○소위원장 강병원 또요?

잠깐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얘기 한마디 듣고 또 한 말씀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저도 조은희 위원님 의견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할 때…… 1권인데요. 1권의 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소위원장 강병원 5-1권의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특례의 원칙 그 부분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이걸 지방세 감면을 해 줄지 여부 그리고 어느 정도 해 줄지에 대해서 법에서 여덟 가지의 어떤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물론 4호에 보시면 조세부담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 여건도 있고요. 조세의 형평성도 있고 다양한 기준이 나오는데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는 상호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가중치를 어디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조세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나눌 때도 있고 사업수행 성격으로 나눌 수도 있고 자산 규모로 나눌 수도 있는데 자산 규모는 상당히 특이한 경우인 것은 분명한 걸로 보입니다.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가 아니라 어떤 담당 업무의 성격, 예를 들어서 화물을 나르는 경우에는 조세를, 국가에서 유인을 주자, 또 사람을 나르는 경우와 차별을 두자라든지 가까운 거리를 가는 비행기하고 멀리 가는 비행기를 차별을 두자 이런 기준이 아니라 자산을 통해서 이 기준을…… 아까 연안, 해안의 경우에는 선박의 경우에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준이 아니라 자산 규모로 이렇게 감면 여부가 갈리게 되면 굉장히 독특한 어떤 입법례는 될 수 있고요.

지금 법체계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을 단서 규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법안소회의장에서는 누구나 다 이게 5조 원이 기준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과연 시행령으로 정부한테 위임할 사항인가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법들에 보면 김교홍 의원님 안이나 김용환 의원님 안이나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다수의 의원들의 안은 어쨌든 지금 항공사에게 주고 있는 감면 내용과 일몰기한을 전체적으로 유지하고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은 그렇게 법안을 내신 것이고 논의 내용도 조은희 위원님께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계십니다만 다 그렇게 의견들을 갖고 계시고요. 정부 측에서도 우리 위원들의 다수의견에 맡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십시오. 어쨌든……

○조은희 위원 아니, 저는…… 제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소위원장 강병원 예, 하십시오.

결론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조은희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저비용 항공사의 자산 규모와 세금 담보 능력에 차이가 있고 대형항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는 2021년 논의 당시에도 단서 규정 존치, 취득세 특례 적용 안 하는 겁니다. 적용은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2년간 연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위원장님 의견에 긍정적인 부분만 읽으시면 안 된다고요.

○소위원장 강병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에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중소기업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지원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공사는 왜 저가항공사랑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차이를 안 두고 특혜를 줘야 됩니까?

○이성만 위원 감면을 줄이는 건데 특혜는 무슨 특혜예요.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일몰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성만 위원 여기는 100% 감면이고 이걸 50% 감면이니까 차별을 두는 거지요. 왜 차별을 안 둥니까?

○소위원장 강병원 하여튼 이 논의는 이 정도 하겠는데요. 어쨌든 법안을 내신 의원님들이나 소위에 있는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자산 규모로 나누는 것의 형평성의 문제, 항공업계에 대

한 추가적인 지원이 계속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어쨌든 뭐 코로나 시기에 화물운송을 가지고서 항공사들이 버텼던 건 있고 여객운송 실적 같은 경우는 여전히 다 정상으로 회복은 덜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우리 소위에서,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관련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우택 부의장님께서 2개의 안을 내셨는데요. 먼저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 감면 관련해서는 추정요건이 현행이 2년 이내에 매각·수출하지 않은 경우에 추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내신 안에서는 ‘승합·화물·특수차는 3년’ 이렇게 한정을 하시면서 기간을 늘리셨고요. 두 번째는 3년으로 기간을 늘리시면서 재난 피해로 폐차한 경우에는 추징을 제외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용 중고자동차 감면의 경우에는 재난 피해로 폐차한 경우에 추징을 제외하는 것이 되겠고요.

최소납부세제 관련해서는 취득세 상한을 300만원으로 올리시는 안과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한해서 적용을 배제하는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107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확대 부분입니다.

고금리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중고자동차의 매각이 어려움을 감안해서 추징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중고자동차 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과세제도 정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취지로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3년에 추징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피해 취득세 추징 예외 사유 규정 관련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

입니다. 다만 수출용 중고선박 등과의 형평성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최소납부세제 기준 완화·적용 배제 여부입니다.

일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특성 그리고 금리인상 등에 따른 판매 부진, 재고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고자동차 등 업계의 세 부담 경감 차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 완화와 적용 배제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만 또 일몰기한이 2024년까지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존경하는 부의장님 안중에 첫 번째 안인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한 취득세 추정 유예기간 확대하는 부분과 두 번째 법안 중에 재난 피해가 확인되어 폐차하는 경우 추정 제외하는 경우는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좀 고려할 사항은 최소납부세제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가 지금 최소납부세제 적용되는 부분이 한 55개 조항들이 함께 같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 원칙에 대해서 신중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우택 위원님.

○정우택 위원 우선 일부 차종에만 추정 유예기간을 완화할 건지 또는 전체 차종에 대해서 추정을 안 할 건지, 이게 제가 처음에는 특수 업종, 일부 차종에만 냈다가 나중에 전체 차량으로 다시 법안을 냈는데 일단 지금 말씀으로는 승합·화물·특수 차량 자동차에 대해서 추정 유예기간 완화하는 것은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정우택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자료를 보면 승합·화물·특수는 이게 2년 이후에 판매되는 차량이 많아요. 그리고 승용은 2년 이후에 판매되는 차량이 적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만 하자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통계수치 자체가 2년이 도래하기 전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매매업자 간에 서로 품앗이 형태로 매입을

잡아 주기 때문에 사실 수치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은 강조하지는 않겠지만 전체 차량에 대해서 추정 유예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제가 좀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가 그 문제도 앞으로 같이 좀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난 피해로 인한 폐차의 경우에 추정을 제외하는 문제인데 이게 매입한 지 1년 이후, 2년 사이에 재난으로 폐차를 하면 취득세 추정을 면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입 이후에 재난 피해를 본 매입 자동차, 이거에 대해서는 왜…… 취득세 추정 면제 이것도 같이 해 줘야지.

매입 후 1년 이후, 2년 사이에만 재난으로 폐차하면 취득세 추정을 면제해 주고, 매입 이후에 재난 피해를 받은 매입 자동차에 대해서도 저는 당연히 취득세 추정을 면제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담당 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강병원 예, 말씀하세요.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 권순태 1년 이내에 폐차한 경우에만 추정을 면제하도록 한 거는 중고 매매상이 중고 용도로, 매매 제비용으로 사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폐차 중에 있는, 구조 결함이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차를 또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자발적으로 알아서 폐차하는 게 아니라 검사를 받아서 폐차하는 경우까지 추정하면 과하다 해서 그 부분에 한정해서 이제 추정 면제 사유를 넣었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 그런데 예컨대 경북 같은 데에서는 지금 조례로 취득세 추정 면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 권순태 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지방의회 의결이 아닌 전국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해 주자는 거예요. 이걸 구태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이거 감면해 주고 있는데 정부가 계속 그걸 묶어 둘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 권순태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조례로 하는 것은 재난

피해일 경우에 그런데요. 그거는 다른 자치단체도 아마 재난 피해로 인한 부분들을……

○정우택 위원 아니, 지금 하라는 게 재난 피해이지 또 무슨……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 권순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수용을 하시겠다는 취지로 아까 제안을 드렸습니다.

○정우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이 최소납부세제 면제 문제, 그래서 200에서 300으로 옮기는 게 다른 거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한다 하면 그건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최소납부세제를 왜 부과를 합니까, 이것에? 이것 2016년부터 시행이 됐지요? 2015년까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최소납부세제 면제…… 이 최저한세 도입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목적을.

최저한세 도입 목적이라는 건 고가품 소비에 대한 과세의 의미가 있는 건데, 상품용 중고차 이것 하는 것을 무슨 고가품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고차 사는 사람들이 이것 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취득세는 매매업자들이 이것을 사서 소유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소비자한테 팔려는 소위 중간 브릿지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취득세를 매기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구태여.

또 외국의 사례도 내가 지금 보니까 일본이나 여러 나라도 지금 매매업자 상품용 중고차 취득세에 대해서는 다 비과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시지요.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 권순태 취득세를 면제한 건 맞습니다. 부의장님 지적대로 맞는데요. 차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율이 1%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현재는 면제인데 그만큼은 부담시키기 위해서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게 됐고 그와 같은 경우와 같이 일본에서도 비과세 대상으로 일부 하고 있는데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아, 미국에서는 그렇고요. 일본에서는 자동차세를 중고자동차에도 과세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미국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 영국, 독일, 유럽 국가

들 다 지금 비과세하고 있어요.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만 예전에 없던 제도를 도입해서 이걸 부과하는, 이 도입 목적을 내가 이해할 못 하겠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강병원 다음은 이성만 위원님.

○이성만 위원 수출용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출용 자동차가 옛날에는 거의 폐차 수준으로 돼 있던 것을 동남아라든지 중동, 아프리카 이런 데 많이 수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3년 정도 지난 그런 일반인들이 타는 고급차량도 엄청나게 수출을 합니다. 수출 물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수출용 중고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출로 가는 건데 수출 진흥적 차원에서도 이 정책을 좀 더……

이게 본인이 쓰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 권순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현재 그 수출용 차도 중고자동차와 같이 100%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쟁점은 그렇게 면제를 하더라도 중고자동차가 통계청에 의해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그 매출액이 포함해서 한 28억 정도 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담세력이 있기 때문에 100% 면제하되, 수출을 위해서 세 부담은 줄여주되 개세주의 원칙에 따라서 15% 정도는 부담시키자는 게 이 취지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 그러니까 이걸 면제해 주려면 깨끗이 다 면제를 해 주지. 왜냐하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산에 대한 등기제도는 사실 몇 나라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더군다나 몇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국내부 환경에서 거래되는 것은 세원 발굴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건 권장할 만한 것인데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따졌을 때는 결국은 중고자동차 값을 올리는 문제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대외 경쟁력을 취약시키는…… 일본도 지금 수출용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물립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했었던 항공기도 마찬가지고 또 해운, 선박 이걸 국제적인 환경에서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법률적 세제체계는 어떤가 살펴보고 형평성 있게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한국 차에 대한 수출용 차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그러시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합의된 수준까지 정리를 하고, 또 이게 일몰기한이 1년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 논의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또 정우택 의원의 안을 전향적으로 일부 수용하셨기 때문에 그 수용된 부분까지만 정리하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성만 위원 그렇게 하고 또 논의하지요.

○소위원장 강병원 그리고 또 내년이 일몰이니 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우택 의원님께서 하셨던 정부가 수용했던 안으로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14페이지,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전세버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내용입니다.

전세버스의 경우에 대중교통버스와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정부 측의 신중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 악화에 따른 지원 필요성, 전세버스는 대중교통법상의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 점,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중교통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현행 감면 대상과의 차이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17페이지의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혜 의원안은 재산세 50% 감면, 정우택 부의장님 안은 취득세·재산세 25% 감면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 논의는 김은혜 의원님 안이었는데

요. 이미 토지에 대해서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있고 지역마다 다른 여건을 감안하여 조례로 지원하는 것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측의 신중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지방 대중교통의 거점으로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점, 경영 악화로 폐업한 터미널의 상당수를 이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객자동차터미널 토지는 재산세가 저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들의 지역별 여건이 좀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최근 한 8월경에 버스 터미널 서비스 안정화방안이라고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세 터미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그 부분을 감면해 주기로 일단은 방침은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어느 터미널을 선정,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감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건은.

○소위원장 강병원 그러면 보류하고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현행은 감면 대상이 일반물류단지 물류사업용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 대상자는 시행자와 입주기업인데요, 최기상 의원님 안은 여기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물류단지를 일반물류단지와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일반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만을 두고 있는 점,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비한 도심 내 물류시설의 육성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급격히 성장하는 물류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일몰기한 미도래 측면을 함께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12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물류단지와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비교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2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일반물류터미널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 양천구, 충북 청주시, 광주 북구, 대구 달서구 등이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고민 사항은 첨단물류단지가 입체복합형 건물로 아마 상가를 끼고 있는 형태가 되든지 여러 가지 복합형 형태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려해 주실 게 최초 취득은 아마 28년도, 최초 취득으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25년도의 기존 물류단지들 검토할 때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그래요.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이렇게 최기상 의원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현재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자비용이라든지 이런 금융비용을 줄여 줄 수 있는 이득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부과는 28년도에 최초 부과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취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적 여유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합건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정도 담세력의 문제가 있는지 등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해서 취득세 경감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후·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데 반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로 추진돼서 도시환경 개선 보다는 주택의 재건축 성격이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주택 소유자 및 공급자에게 개발이익이 귀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실은 재개발사업하고 재건축 사이의 어느 중간 정도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재건축 쪽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사업은 어쨌든 전체적인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기능 회복이라는 그 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32페이지입니다.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사업장 신설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추정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규정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정의 근거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점, 추

징 유예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 매각·증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 일반적 추정 규정인 제178조에 비해서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유사 감면 규정과의 과세 형평성을 감안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 규정을 보다 엄격히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에 반해서 부칙은 창업에 따라 감면받은 부동산을 추정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할 부분을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만 위원 (손을 들)

○소위원장 강병원 이성만 위원님.

○이성만 위원 추정요건을 이렇게 강화한 이유가 뭐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유사한 다른 조항과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성만 위원 그런데 반환공여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미군들이 쓰던 토지 아닙니까? 그런데 미군들이 쓰던 토지들이 반환이 됐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환경오염이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정화 활동이 이루어진 이후에라도 추가적인 환경정화의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LH나 민간개발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기왕에 사람들이 매매하던 데 이런 데는 거의 문제가 없지요. 매매하던 데는 이미 앞서서 그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매각했을 테고 또 LH 같은 데서 조성한 토지도 당연히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공여구역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화 활동이 1차로 끝나고 사업시행이 됐다 하더라도 또 환경정화 활동이, 또 다 이옥신이라든지 중금속이 발견되는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평성하고 맞춰 들게 아니라…… 처음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

유 없이’라고 하는 완화 기간을 둔 것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연장을 하면서 이 추정요건을 강화시키는 것은 좀 동일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말씀하신 반환공여구역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만 위원 아니, 뭐 살펴봐요, 내 동네가 그런데? 우리 동네가 한 번 개방했다가 다시 또 문닫고 또 정화 활동하고 그런 게 수시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완화 기간을 뒤서 오히려 법적으로 혼잡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유인 것은 사업시행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공원녹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3분의 2 예산을 대 주니까 이걸 매입해서 공원으로 쓰게 되는데 개발부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돈을 대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국은 매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요건이 강화되면 그런 사업성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공여구역에 있는 개발부지가 매각된 사례가 극히 적고, 많지 않고 하다 보니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고 3년 후에 검토하 시면 어떤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위원님 주신 말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정부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정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 사용한 기간이……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추정한다’는 저희 일반적인 적용례입니다.

○이성만 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만 위원 현행은 3년 이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예, 그래서……

○이성만 위원 얘기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그래서 지금 제안하신 내용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씀 드리려는 겁니다.

○이성만 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그래서 저희 정부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로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특수성을 감안해서 ‘3년 이내’로 그렇게 해서 수정 수용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 당초대로 하시고 한번 지켜보세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 반환공여구역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그러면 정부안이 아니라 현행대로 가자 이런……

○이성만 위원 아닙니다. 정부안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를 ‘3년 이내’로 수정하는……

○소위원장 강병원 아, 3년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안이되 정부안을……

○이성만 위원 그렇지, 매각하고 증여하면 그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소위원장 강병원 3년으로 바꿔서 하신다 이런 거지요?

○이성만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두 칸 중에 위에 있는 칸이요.

○소위원장 강병원 알겠습니다.

○이성만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소위원장 강병원 그렇게 수정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있잖아요. 122페이지 말이에요,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 28년에 뭘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최초 취득이 28년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그런데 122페이지 참고2에 보면 도시첨단물류시범단지 현황들 중에서 몇 가지가 있잖아요. 최초 취득이 28년이다, 누가 취득한다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아마 서초 같은 경우에 표에 보시면 ‘28년 준공 예정’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준공 예정이라는 얘기는 이미 취득을 다 했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 권순태 그러니까 차관님께서 보고드리기를 이게 일반물류단지하고 다르게 입체형 건축물로 들어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강병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도시에다 첨단물류를 하는데.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 권순태 예, 그런데 그 전체를 다 감면 대상으로 하는 것은 너무 규모가 크고 또 목적상도 맞지 않습니다. 그중에 도시첨단시설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가 구체적으로 구획이 정리되고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그 시설물이 확정이 돼서 취득 신고되는 시점이 28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성만 위원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를 산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 권순태 그 사업계획서상에 그게 특정될 수 있다면 그것도 검토 가능하겠지만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게 확정이 돼서, 도시첨단시설 그리고 또 주거시설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는 단계에 그것이 확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감면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요 121페이지를 보면 감면 대상이 현행은 물류사업용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 아니고. 그리고 최기상 의원안도 도시첨단물류단지 그리고 물류사업용 부동산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감면 대상을 넓혀 주고 혜택을 줘야 122페이지에 있는 이런 시범단지들에 대한 사업성이 높아져서 보다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의 법안 발의 내용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 권순태 당초 취지……

예, 법안 발의 내용은 그렇게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은 물류단지이기 때문에 물류단지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관련법에 의해서 물류단지는 ‘물류단지’로 이렇게 법정 용어가 돼 있지만 도시첨단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입체형 복합건축물 안에 도시첨단물류시설이라는 것이 다시 또 정해지도록 돼 있고 그 시설에 한해서만 물류시설로 쓰여지도록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수석님, 한 말씀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

명을 들으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8년에 준공 예정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걸 안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 안이 통과 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8년 동안에 감면될 대상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획으로 지금 25년 착공, 28년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준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업들 경우에 더 일찍 돼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법을 제안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사업이 되질 않고 있으니 토지를 취득해 가지고 이 사업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세제 감면안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계획으로 해서 물류단지를 확정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걸 확정할 수 없을 수도 있고 확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계획을 짤 때 충분히 그 설계도면에 보면, 물류단지가 지하의 1·2층이 물류단지고 2층 이후는 복합 뭘로 짓는다고 하는 게 나와야 그게 아마 복합 개발이 될 텐데 그 계획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것을…… 지금 논리가 조금 모순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장님, 이것은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예, 그러세요. 왜냐하면 122페이지 개정안에 기존 물류단지와 도시첨단물류단지 비교를 해 봤지 않습니까? 아마 도시에 들어서면 물류단지가 과거처럼 굉장히 넓은 공간을 나대지에다가 하는 건 불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의 가치도 높기 때문에 아마 지하로 물류시설들은 들어가고 그 위를 복합화할 거라는 건 다 예상이 되고 아마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자체나 서울시라든지 시도 같은 경우, 광역들 같은 데도 그렇게 공해가 유발되는 게 국민들 눈에 보이지 않게끔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개발사업 시행자나 입주 기업들에게 이런 특혜를 줘서 사업성을 높이려고 하는 취지 같아요. 정부에서 검토를 한번 하셔서 가지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소위원장 강병원** 아까 132페이지는 했고요.

정부 측에서 수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가 아니라 3년이라고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그리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데 이것도 건드리는 겁니까, 2년 미만은 그대로 갑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그것은 그대로 갑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그것은 그대로 가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수정해서 처리하고요.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37페이지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기업이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확대하면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지정이 해제된 후 5년 이내에도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산세 감면 기간의 확대 부분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에 의해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지역인데 재산세는 지자체 세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은 23년 3월 14일 날 신설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성과평가가 가능한 정도의 기간 경과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후 제외되는 지역에 대한 특례 신설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일몰기한이 많이 남은 관계로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41페이지 택지개발용토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등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될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재산세 면제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매입·개발 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하여 혁신도시특별회계에서 종전 부동산 매입 등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형태로 보전받을 수 있는 점, 그리고 일몰이 아직 미도래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페이지에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임호선 의원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동일한 논리로 아까 심의를 했는데요. 동일한 이유로 보류가 된 안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보류하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예.

○소위원장 강병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44페이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산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을 설계·제조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산시설을 포함한 제조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감면 규정과의 형평성 및 감면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특정 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점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산업단지나 창업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에서 이미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자율주행자동차 생산 같은 유사한 케이스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산업들과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25년도까지 일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48페이지 법인 및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윤재갑 의원안에 대해서는 연계 법안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개정법안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계류 중인 점 그리고 김희재 의원안에 대해서는 21년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였으므로 일몰이 도래하는 24년에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정부 측의 신중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윤재갑 의원안은 다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유사 특례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150페이지에 일몰 미도래 그리고 신정훈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규정을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법인 및 공장의 지역 중소도시로의 이전을 촉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최대 12년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수석전문위원께서 짚어 주신 형평성 문제라든지 관련 법률이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59페이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추가 경감 부분인데요. 취득세 경감 시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100분의 50의 범위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 지역경제 현황, 국내 복귀기업 유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감면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해외사업장의 축소 포함 여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옆에 참고조문 보시면 3호에 나와 있는데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조건으로 국내 사업장의 신설·증설,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해외사업장의 축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해외사업장의 축소를 감면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칙은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함으로써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안 의결을 희망합니다.

지적해 주신 해외사업장 축소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방재정이 부담되는데 해외기업의 완전한 복귀가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외로 다시 재이탈하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의 설명이 충분히 타당한 것 같은데요.

이건 있으십니까?

이성만 위원님.

○이성만 위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문제나 앞서 있었던 법인 및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이것은 사실은 내용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공장 이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든지 이런 공익적 목적은 동일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이전에만 집중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이 문제를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그 부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감소 지역에 대한 어떤 사업장 또는 공장이 이전하는 경우 그러한 이전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논리가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렇게 했는데 외자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감면을 한 10년씩 해 줘서, 5년 내지 10년. 왜냐하면 공장이라는 게 한 번 거기 들어서게 되면 몇 년 내에 수익 내고 끝낼 게 아니니까. 그래서 관련된 이전 문제를 우리 행안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나라 미래전략의 절실한 내용에 따라서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화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건 바이 건, 해당 법에서 하는 것을 따라서 가기보다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성만 위원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좀 보면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이성만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처리를 하고요.

말씀하셨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서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63페이지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구자근 의원안은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지방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박성민 의원님 안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과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역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감면 내용을 비교해 보면 박성민 의원안은 구자근 의원안과 달리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의한 추가적인 감면여지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자근 의원안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타 법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유사 감면과의 비교입니다.

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과 관련해서 현행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과 유사합니다. 수도권 특구의 경우 유사한 감면 수준이나 비수도권 특구의 경우는 조례를 통한 취득세 감면을 및 재산세 감면기간의 상향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과 관련해서 현행 공장 및 법인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수준과 유사하나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은 없으며 조례를 통하여 50% 범위 내에서 5년간 추가적인 감면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은 현행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과 그 수준이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박성민 의원님 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자체 기업 유치·유인을 위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위한 내용들입니다.

○이성만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소위원장 강병원 이성만 위원님.

○이성만 위원 163페이지에 보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지요. ‘지방정부가 투자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이렇게 되어 있지 않

습니까? 그런데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니까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을……

그러니까 박성민 의원님 안을 보면 특구 내 창업기업이면 이 안에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1번하고 3번이 수도권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이성만 위원 수도권도 다 기회발전특구로 이미 지정이 된 데, 예를 들자면 웅진이라든지 접경지역, 강화도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정만 되면 결국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이성만 위원 제가 좀 오해를 했어요, 수도권 외만 대상이 되는 줄 알고. 그것 좀 정리하려고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그러면 이것을 따로 정부 측하고 수석님……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박성민 의원안으로 아마 하는 걸로……

○소위원장 강병원 박성민 의원을 다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중에서 아닌 게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박성민 의원님 안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들 없으시지요?

그러면 박성민 의원안으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에서 수정할 건 없습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예.

○소위원장 강병원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72페이지 수도권 밖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농어촌주택 취득세 면제입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가 농어촌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정부 측의 신중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은 타 감면 규정이 현재 존재하는데요. 현행 생애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주거용 건축

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시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층과의 과세 불평등의 우려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동의합니다.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타 감면 규정들이 존재하고 또 다른 계층과의 과세 형평성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75페이지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조문에서는 직접 사용 요건이 부재해서 직접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없애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이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77페이지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된 송전철탑·송전선로 부지로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지에 대해서 재산세 50% 감면을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매년 임대료 성격의 보상금 약 1000억 원이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측의 신중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기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 등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송전철탑·송전선로 부지로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지의 경우에는 건축 등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재산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재산적 보상 청구와 주택매수 청구의 경우 각각 인근 지역 거주와 주택 매각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전국 송전철탑 등의 부지에서 지상권 등이 설정된 토지는 22만 필지에 이르는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신중검토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임대료 성격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고 또 저율의 분리과세가 여기에는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소위원장 강병원 이성만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만 위원 송전철탑이나 송전선로 지하의 토지 등 소유자이거나 또는 그 사람의, 거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보상금은 진짜 새 발의 피입니다. 그리고 실제 당하는 고통, 특히 고압선로 같은 경우에는 각종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그런 루머가 끝없이 도는 상황이에요, 백혈병에 걸린다든지. 그래서 그 지역의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도 굉장히 크고 그 송전선로가 지나는 곳에 대한 이전 욕구가 주민들에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곳에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과정 속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상을 안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누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송전철탑·송전선로 부지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강구를 해야 차라리 송전선로 밑에 있는 게 좋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취득세니까, 이것 취득세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재산세입니다.

○이성만 위원 아, 재산세지요, 재산세. 그러니까 재산세에 따른 유지비용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만큼 불만도 덜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일부 보상을 받은 바는 있지만 소유권을 다 완벽하게 활용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한전 측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서 이것은 당연히 재산세를 좀 감면해 주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율을 결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좀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서 안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국장님.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지금 이 경우에 한전이 토지수용이라든지 매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매수할 의무도 있고요. 또 부족하다는 취지는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 자금 지원 체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한국전력이 지원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서 지자체 재산세로 결국은 지원해 줄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성만 위원** 내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지금 사권 제한토지가 90개 법률에 한 230여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사권이 제한되지만 저희 법에 담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성만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 송전선로가 있던 지역들은 대부분이 산이나 논밭을 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도시가 확장되면서 이미 상당 부분이 그 선로 밑에 자연부락 쪽으로 주택이 들어서거나 그러다 보니 아예 주거지가 돼서 활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데도 안 해 주는데 여기만 해 줄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한전 측하고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소위원장 강병원** 그러시지요. 정부 측에서 한번……

○**이성만 위원** 한번 고민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저희가 내년이 일몰이라 현장도 한번 가 보고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성만 위원** 예, 한번 부평에 오세요. 내가 밥도 사 드릴 테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조영진**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계속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5-2권의 마지막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80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입니다.

개정안은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 철거 또는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한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30%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빈집들을 방치할 경우 우범지대로 변할 우려가 있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빈집의 철거 촉진 및 정비를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과 관련해서 감면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은 저율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철거 보상비 지급 관련입니다.

철거명령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게 되는 경우 빈집의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그리고 별도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인데요. 빈집 철거 시부터 6개월간은 상대적으로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따르면 빈집을 철거한 토지에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과세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철거된 빈집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저희가 시행령으로 바꾸는 것으로 현재 입법예고를 했어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세 부담 상한 같은 부분들을 저희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강병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성만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죄송한데……

○**소위원장 강병원** 예.

○**이성만 위원** 이러면 앞의 부분하고 너무나 형평에 안 맞지요. 예를 들자면 빈집을 철거했습니다. 철거를 하면 건축물대장도 일단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할 때도 토지만 남게 되잖아요. 그리고 6월 1일 날 과세를 하기 전에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은 이것에 대한 의견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후라

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면 집값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줄여서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감면세를 두게 되면 거기에다가 30%를 또 추가로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 오히려 공익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희생하는 사람 재산세를 낮춰 줘야지, 이것은 본인이 노력하면 건축물에 대한 가액만큼은 당연히 빠지기 때문에 재산세가 그만큼 과표가 줄어듭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님, 사실 빈집이 되면 건축물이 아니고 나대지가 돼서 세율이 한 3배에서 5배 정도 다시 뛰게 됩니다. 그것을 조정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성만 위원** 그것은 적치물, 지장물을 해소했을 때 오히려 토지 이용도가 더 높아졌을 때 얘기고요. 그때 얘기고, 그래서 실제 따져 보면 전기 보내기 위해서, 밑에서 사는 사람들의 고통이 더 큰 것이지. 그러니까 형평에 맞지를 앓고요. 그 사람들이 더 억울한 사람들이지요. 전선 이고 살아 봐요, 얼마나 괴로운데. 그 사람들에게 대한 세율 문제를 조정해야지, 여기는 집값이 오른다고 그러면 박수 칠 일인데. 그 사람들을 왜 감면을 해 줘요? 자기 재산 값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을.

○**소위원장 강병원** 하여튼 정부가 시행령으로 여러 가지 것을 세 부담 완화했다고 하니까요. 그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1소위 법안심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늘 다 하지 못한 지방세 관계법 심사를 마친 후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심의로 수고 많으셨고 차관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진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 관

지 방 세 제 국 장

지 방 재 정 국 장

고 기 동

조 영 진

한 순 기

○출석 위원(9인)

강 병 원 문 진 석 박 성 민 송 재 호

이 성 만 이 해 식 전 봉 민 정 우 택

조 은 희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 상 조